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1993年 12月 1日(水) 午前10時

場 所 平昌郡廳大會議室

### 議事日程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 實施의件

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 審査된案件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 實施의件

3 面

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27분개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창군에 대한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평창군의회 개원 후 세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 대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와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다음은 권순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인사)

다음은 이영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장세덕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인사)

다음은 김학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다음은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시한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인사)

다음은 박영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정의수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인사)

다음은 오홍일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인사)

다음은 홍기표 도시.건설과장입니다.

(도시.건설과장인사)

다음은 임영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전근택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인사)

다음은 이우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인사)

끝으로 박준하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李相燾~~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창군의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부서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게되며, 금일 감사대상은 기획실,문화 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사회 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1. 1993年度平昌郡行政事務監査實施の件

(10시47분)

○ ~~委員長李相燾~~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고창식  
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  
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재명 기획계장을 소개합니다.

(기획계장 인사)

신종해 예산계장을 소개합니다.

(예산계장 인사)

장현평 법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법무계장 인사)

우선 감사에 앞서 기획실소관 '93주요업  
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군  
종합개발계획수립 그리고 대형사고및  
재해예방추진 그리고 1992년도 평창년감  
발간 그리고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지방  
채 현황, 끝으로 소송계류중인 사건 순  
으로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명  
으로 기획계에 5명, 예산계3명,법무계  
2명 통계계 2명으로 구성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기본 사무는 기획계는 군정전반

에 관한 기획조정 및 통제업무,기본운영  
계획수립및 심사분석 군의회 운영에 관  
한 사항, 그리고 대통령 ,총리,지사, 군  
수 지시사항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계는 예산편성및 예산집행의 감독,  
자금수급계획및 예산운영, 지방채,기채  
일시차입,채무부담행위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무계는 법령, 자치법규에 질  
문,해석및 조정에 관한 건 그리고 규칙,  
훈령, 조례제정 및 개폐 또한 소송행정  
심판 사무처리및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통계계는 일반, 농업, 경제등의  
통계조사와 기본 통계조사및 자료모집  
분석, 통계연보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로 군 종합개발계획수립추진입니다.  
평창군의 공간적 범위를 평창군이 전체  
행정구역 1,460㎢개발 계획 대상지로 정  
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  
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 년도는 1990년이 되겠으며  
목표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진도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전문기관인 영동산업문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3년 3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획수립기간으로 정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 설문조사를 1회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간담회 1회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군및 도의원을 대상으로 시안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누어 평창읍과 진부면에서 2회에 걸쳐 180명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획단에 93년 11월 10일 시안 심사를 걸쳐 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회 갖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대형사고및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책임예방 관리 활동강화를 위해서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와 재해 유형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대형사고 발생우려요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 32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심지역이 1개

소,우려 35개소,주의 22개소로 총 58개소가 불안정 판정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군청,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1992년 평창연감 발간입니다. 1,400만원을 투자하여 400부를 발간, 필요대상기관에 배포함으로써 본 연감은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종합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 입니다. 군청사 3층 즉 기획실 앞 사무실에 행정수행및 공무원 자실향상에 필요한 교양도서등 필요한 자료및책자를 수집 1,304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집해서 공무원과 민원에게 공개 열람토록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방채 현황입니다.

차입금은 165억1,900만원중 일반회계 차입금이 60억5,200만원으로 평창,미탄,방림,봉평,용평면과 군청사 신축에 총 8억7,800만원이 차입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3억8,200만원, 상수도사업에 3억 5,700만원 송정택지개발사업에 30억 2,4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14억1,100만

원이 차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04억6,7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에 43억 2,200만원, 주택 사업에 53억 8,600만원, 농공지구조성에 7억5,600만원이 차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상환계획은 총 165억 9,100만원으로, 93년도에 8억3,900만원 94년도에 26억 1,300만원, 95년도에 10억 8,400만원, 96년도이후에 119억 8,300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끝으로 계류중인 사무처리는 총 7건으로 현재 1심에서 승소1건, 계속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6건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건별 기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추진 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dacted]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기획실 자료중에서 평창군 전체에 대한 추산부하고, 증빙서,출장복명서를 요청한바 있는데 지금 추산부 내용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평창군내 전체 공무원께서 필요로하는 출장비 추산부를 복사 해서 사본이 첨부되어있고, 기획실을 보기위하여 한것입니다,기획실을 체크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추산부를 봤을때 검토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신 복명서나, 증빙서가 있어야 할 텐데 없습니다.

제가 말씀올리는것은 그냥 보는걸로 끝나지 감사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는걸로 끝나는 것이지 맞춰보는것은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면,

추산부를 보니까 이용기외 3명 36만원, 9만9,000원이 있는데, 제가 92년도 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다니면서 각읍면을 보았고, 본청 건설과,내무과,산림과를 중점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과에 대해서 증빙서를 뽑아보니 전체 부대비 중에서 여비를 쓴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비로 지출된 증빙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A라는 사람을 1일,2일날 출장명령을 내어 증빙서를 작성하고, 출장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몇일후에 B라는

사람, C라는사람, 순서대로 나갔다가 다시 돌고 했는데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디 과라고 말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출장비를 지출했다 했더니, 내무과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과도 업무량 쪽주로 인한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사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증빙서를 복사 안해서 방법은 없고 이용기, 조상현, 여정은씨는 93년도 예산 편성결과보고서 작성 합동 작업인데 이것은 식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대충은 군청에 오래 나와 있는데 어느면에 출장이고, 어느면에 출장이라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공무원 인사법령집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규정이나 인사관계등 간단한 것은 복사를 해서 가져 왔는데 8km 이내일 경우는 버스또는 순수한 시내버스 요금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치욱 의원님께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용기, 조상현등에 대한 여비지출문제가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용기나 조상현은 예산계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나 결산할때에 도와 관계가 있기때문에 실제상 예산계는 출장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상도하거나 필요한 여비로 정당성 있게 집행된 여비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고맙습니다.

○ [redacted] 팍문춘 위원입니다. 평창군을 상대로낸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평 레미콘 황우창소송건과 국제트렌스 소송건인데 2차 변론이 11월 30일 어제 날자로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중인지?

○ [redacted]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자료로 확보를 안해서 제가 심층있게 업무분석을 안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소송낸 업무수행은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법무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실제적으로 가서 변론을

하고 또 여러가지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안인가 생각하는데 양해하신다면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네, 답변하십시오.

○ [redacted]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박문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법무계장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고, 지금까지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평레미콘관계입니다.

용평레미콘 부지가 일시전용으로해서 3년간의 허가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료가 9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용평레미콘은 이것을 3년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원상복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능지전용을 취소를 하였고, 따라서 건물철거 계고를 하였고 지금까지 지난 93년6월3일자로 11차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측에서는 위 부지가 절대능지에서 해제되어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양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함이 좋겠다는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간 강원도에도 질의하였고, 행정심판

을 제기하여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기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니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실히 소송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트렌스 관계입니다.

지난 11월30일 2차변론이 있었는데 법원측에서 현장사진이 보존되었고 겨울철 눈이 쌓여 있으니 굳이 현장검증이 필요하겠느냐고 보류 하였습니다.

현장검증이 있더라도 훼손면적이 넓고 수해로 인한 피해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는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입니다.

더욱 충실히 소송업무를 진행 하겠습니다.

○ [redacted]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현지 답사도 해보고 군청에서도 현지에 가보았는데 산림훼손이 많았는데 동일건설에서 무슨 배짱으로써 현지에 가봐야 되지도 않는데 배짱을 씁니까?

○ [redacted]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지 복구상태를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때에는 현지 와봐야 원고의



유리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검증을 우리가 더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 [redacted] 잘알았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장현평계장님 앉아계십시오

자료 7페이지를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으로 대상지가  
도암면 횡계리 581-3외 5필지인데 이사  
항이 언제부터 소송이 되었으며, 내용이  
어떠한 사항인지? 왜 의문점이 가느냐  
하면, 피고증 세사람은 국가에 이미  
반환을 했고, 두사람만이 위반을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redacted]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가소송입니다.

국가소송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  
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을 직접안하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 군에서는 업무보조  
만 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횡계리에 농지개량사업 지구내는  
사실은 국가땅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피고증 3명은 국가에 반환했는데.  
2명은 옛날에 자기소유라고 주장해서

반환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  
드려야겠고,그래서 국가소송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소관하지 않기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수없습니다.

○ [redacted] 이와 때를 같이해서  
본군에 군유지도 불하한 것이 있지요?

○ [redacted] 군유지 불하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 [redacted] 기획실은 해당이 안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횡계리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청구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건을 보면 집행부에서 일관성  
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평창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피고라  
해서 소송이 되어 수차에 걸쳐 하나도  
판결을 받지못하고 현재까지 끌고 있는  
데 지금 횡계리를 보면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군에서 권리가 없  
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농경지정리를 버들밭 숲길을  
농경지정리를 해서 관리도 안하고 버려  
두었다가, 그지역에서 수십년간 농사

를 지어오는중에, 어느한때는 조치법으로 인해 서울사람한테 등기가 되어있고, 어떤때는 반환한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군에서 찾겠다고 하니 두사람이 반환하고, 박병기의 몇사람은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이런것이 내려오면서 서로 주민하고 집행부측하고 서로간의 갈등이 생기고 소송을해서 서로간의 판가름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군내에 보면은 국가 공유재산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가 찾겠다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이것도 빨리할려면 자료를 완전히 수집을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트렌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산림훼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수해를 입어 피해도 많았고, 수해난 뒷일로 인하여 토사가 많이 무져졌는데 군에서는 치우지 않고 면에서 치우긴 치웠는데 이것도 겨울에 월동중에 열었다가 녹으면 봄에 다시 흘러내릴우려도 있는데, 지금 이런것도 사실은 허가를

해주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당하고 있는 경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도 어떻게 소송이 되어서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조금전에 광문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국제트렌스산림훼손 복구 검사신청을 받아 트렌스 사업소에서 복구설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낙을 하고 복구설계도를 인수해가고 설계도대로 복구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그쪽에서 낼때까지 9,500만원까지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낼려고 설계대로 부족하게 복구를 했는데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만하면 복구가 되지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사진을 33매를 찍어 법원에 제출했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첨부해서 제출했는데, 지금 2차 변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오래 갈것같지는 않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이미 보류를 시켰지만 현장을 본다음에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9천

을 한도액으로 해놓았고, 그것으로 복구  
에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redacted] 11월 30일날 변론을  
했는데 어떻게 변론이 됐습니까?

○ [redacted] 원고측에서 현장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와서 법원 재판부에서 봐달라고,  
저희가 동일건설측에서는 현재 상태가  
원만하니까 그걸로 해서 가급적 인정을  
받으려는 저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 [redacted] 그런데 현지로  
봐서 수해가 나 형태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복구를 했  
을때 찍어놓은 사진이 충분한 자료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 [redacted] 저희도 보관하고  
있고 제출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53페이지에 군  
수 포괄사업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기  
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백옥포리 우회도로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백옥포 어느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왜서 우회도로를 만들었느냐 하는것이  
궁금하고,

유천출장소 신축증 물량증가인데 출장소  
짓는데 어떤것이 발견되어 포괄사업비  
가 무자가 되는 것인지, 출장소를 짓자  
면 설계도에 의하여 짓는데 부득이 포괄  
사업비를 집행할 처지가 되면 설계변경  
을 해서 예산을 따로이 무자가 되는 형  
태라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투자했는지  
두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

○ [redacted] 먼저 백옥포리  
우회도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  
다.

백옥포 우회도로는 백옥포2리에 다리가  
한경간이 차가 지나가면서 난간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리를 놓기 전에 지역주민  
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만  
들어 달라고 포괄사업비를 지원해주었고  
유천출장소 신축증 물량증가로 되어 있  
습니만은 유천출장소 금년도 신축을 하  
면서 건물만 계상했고, 울타리, 하수도  
사업비를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천출장소 마무리차원에서 울타  
리비하고 하수도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 [redacted] 백옥포1리죠?  
1리 다리난간이 끊어진건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우회도로를 냈어요?

○ [redacted] 지원당시에 예산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도로를 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강바닥위로 대형차량만 지나갈수있도록 했습니다.

강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를쳐서 도로를 임시적으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출장소 신축을 하는데 울타리 ,하수도는 공공기관을 짓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항들인데 빼놓고 다음에 포괄사업비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니까 귀하게 써야할 주민의 시급한 사항에 투자할 군수포괄사업비를 잘라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도 넣지 않고 한다는것은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 [redacted]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 가야 하는데, 실지 지어 놓고 보니까 우선은 행정기관하면 보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필요성은 있는데 제생각에도 잘못되었던 같습니다.

○ [redacted] 지어놓고 보니까가 아니라 당초부터 예산이 되는 겁니다. 예상치못한 설계 누락분이라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데 청사를 짓는데 청사에서 나가는 하수도라든가 울타리는 부수적으로 분명히 누가 설계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설계를 고의적으로 빼놓고 이런식으로 보충을 한다고 하게되며는 모든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참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redacted]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우회도로는 이렇게 물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만한 예산을 적용한다는것은 차라리 난간 하나를 이 돈이면 만들어요?

본위원이 새마을 지도자를 할때 그다리를 놓는데 가서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다리에 대해선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있는데 그돈이면 난간을 만들든지 또 이지역에 대형차량이 드나들 이유가 없어요, 왜 말가졌냐하면 다리는 부실하게 만들어 졌는데 주민이 객토사업하느라고 내려앉았는데, 용평면장이 군에 있는

철골제로 응급조치를 하고 주민이 일반적인 생활하는것, 농산물 4t복사나,5t복사가 위로 다니는데는 큰 위험도 없고 별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도 다리가 내려 앉았을때 가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불바닥을 임시 우회도로라 하여 예산낭비한것 같아요?

○ [redacted]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현장을 확인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자동차라는 장비가 상당히 커지고 그전에는 예불 들어서 농가주택을 지을때 시멘트를 필요로 하는 사업일때에는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지금대다수 농가나 농촌에서 레미콘 이용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 [redacted] 그러한 것도 없고, 백옥포1리에서 다리를 건너 가서 농가는 불가 몇명밖에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다만 용평면장이 응급복구해놓은 그 상태로도 주민이 농산물 반출을 하거나 일시적인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이것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 [redacted]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redacted] 이처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현황을 다시 검토를 해보았고, 출장복명서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서보관상 1년으로 알고 있는데,92년도 출장 복명서는 있으리라 생각이되고 91년도는 없겠지요?

그런데 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칙을 보면 인사법령집에 있는것을 발취한 것인데, 실장 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출장간 내용이 구술로서 전부 상사에게 복명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장 복명한 후일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로 남긴 출장복명서가 있는겁니까?

하나도 없는겁니까?

○ [redacted] 출장복명서는 문서상으로 제출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중요도에 따라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구두로 복명을 합니다.

○ **李致玉 委員** 여기복무조례도 보편은 구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경미한 것은 구두로 보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일지나, 출장복명서로 기록을 해서 문서 보관기간이 복명서는 1년인데, 시간상 보관돼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사를 못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시원스럽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가도록....,

○ **企劃室長 高和權** 예 그렇습니다.

○ **郭文春 委員** 광문춘 위원입니다. 여기에 풀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역도부 창단보조에 850만원이 집행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 씨름부만이 있는줄 아는데, 역도부를 창단 했습니까?

○ **企劃室長 高和權** 저희들의 풀보조 사업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자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배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필요성여부는 앞으로 사회진흥과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위원이 사회진흥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보다 현명한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郭文春 委員** 그래도 예산이 기획실에서 집행할때 역도부 창단 보조라고 명세가 들어올텐데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지출합니까?

○ **企劃室長 高和權** 이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郭文春 委員**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하지요.

○ **金鍾永 委員** 김종영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지급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일부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런지, 또한 교육청으로 하여금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高和權**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아 공공도서관에 지원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22조하고 23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3조에는 공공도서관에 균형이 있는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귀속된것이 아니고, 군립도서관 공공성을 띠고 있기때문에 인제적인 양성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redacted] 일부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직비,.....,

○ [redacted] 교육청에 예속된 직원이지만 교육청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고 도서관 요원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만 운영이 되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 [redacted] 교육청에 편입되어 있지요?

월급을 교육청에서 받는거 아닙니까?

○ [redacted]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경상비입니다.

○ [redacted] 이금액이 일부금액입니까?

○ [redacted] 예 그렇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 요구증에서 각종 증빙서, 지출내역의 지급명세서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출예산 추산 내용을 사본한것이 흐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를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실에는 감사자료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redacted]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 [redacted]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1억원이 맞습니까?

○ [redacted] 예산이 1억8,000입니다.

○ [redacted] 그다음 평창군종합 계획기술용역비는 얼마입니까?

○ [redacted] 6,500만원입니다.

○ [redacted] 삭감이 된것입니까?

○ [redacted] 삭감이 된것이 아니고, 본 예산은 7,000만원인데 입찰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 [redacted] 다음은 군정수행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redacted] 이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특별정신 교육을 참석하는 여비라던가, 공직자 특별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받는 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redacted] 그다음 예산서 발간 및 심의자료제작 예산집행 현황에서 현재 763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

○ [redacted]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저희들이 향후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서 발간을, 94년도 예산서를 발간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원입니다.

○ [redacted] 그럼 예산자체가 이월 됩니까?

○ [redacted] 이월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액은 제1회추경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제1회추경예산서 인쇄, 이런것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redacted] 그리고 기획실에 예산서 발간 예산액이 1,709만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redacted] 거기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인쇄할때는 페이지, 종이재질의 가격에 의하여 지출이되고 활자크기 국문또는 한문, 전자조판, 음셋트인쇄, 제본등 여러가지에 원인이 있고, 인쇄물 중 단가기준에 대한 산정입니다.

○ [redacted] 끝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어느 도서관을 말하시는 겁니까

○ [redacted] 평창도서관입니다.

○ [redacted] 예산이 무려 2,758만원인데, 지원한 근거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산하 도서관이 아닙니까?

○ [redacted] 명칭이 교육부의 도서관이 아니고, 평창군민을 전체로 하는 공공성을 띤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 [redacted] 공공성을 띤것기 때문에 매년 도서관리 유지비로 예산



투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redacted]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 [redacted] 재원이 충분하면은 지원을 계속 지원해주어도 좋은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었고, 운영도 교육청에서하는데, 하필이면 군예산을 지원해주느냐?

○ [redacted]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건물자체가 특정 학생들만이나, 공무원만이라도 아니고 평창군민이 전체가 다 이용할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또 부리적인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향토인재 양성문제도 나오고 저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운영이 잘되어야 또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redacted] 에 이상입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물보조금 현황 46페이지보면 자전거타기 대회 보조가 있는데, 금액은 70만원, 많은 금액은 안나갔습

니다만은 평창군이 강원도내에서 자전거타기 시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좁은 주차난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가까이있는 공직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라, 건강상에도 좋으니까 권장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서는 자전거타기가 지금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사회진흥과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사실상 국가시책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가, 군민의 건강 향상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꼭 전개되어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들어오면서 대다수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지금 아무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자전거타기 대회다, 이런 특수적인 시책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또 모든 투자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국민을 계도한다하더라도 우선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아직까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의식구조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겪은 경험인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외부 타 국가에서도 중진국 대열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처음 타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는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때는 자연적으로 자기 건강위주의 사고방식, 또 좋은 차를 선호하지 않고 작은 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한 단계 앞서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차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우리들은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면 속도 풀어지고 그날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도 좋은데 실지 평창같은 경우 제일 쪽 뺨은 길이 우회도로입니다.

거기 타다 보면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하던지 평창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한 40분 정도 들수 있는 코스,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현재 혼자 생각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직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식구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한 차원 높아지게 되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해도 타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합니다.

○ [REDACTED] 지금까지 모든 시책이나 어떤 지침에 의하여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지역의 여론이나 바램보다도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잘 따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는 처음에만 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뒤에는 전혀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범군으로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은 관계공무원께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플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전물균경유족회하고 대한전물균경미망인회는 분기별로 지불합니까?

○ [redacted] 에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다음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도 분기별로 지불합니까?

○ [redacted] 에 그것도 분기별입니다.

저도 사회과장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전체의 발전이나 개발에 비한다면 저도 사실상 기록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의 빈약한 실정에서는 무리적인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분들인데 또 국가가 지역분들을 돌보아주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차입금이 1,900만원, 특별회계에 100억 이상이 되는 엄청난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상수도 사업하고, 송정택지개발, 수해복구사업은 본 사업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상환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에도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도 직접적으로 상환금이 조성되어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도 실질적으로 적자사업이고, 각종 누수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상환금 조성이 어려운 사업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도 농공지구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업체들이 불실 기업으로 몰락해 가고있어, 회수가 어려운 처지인데 이 지방채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고, 이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밑에 연차별 상환계획만 되어 있어서 자금이 어디서 각출이 되어야 상환이 될텐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것인지, 또 위에 청사를 많이 지으면서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부채를 상환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십시오?

○ [redacted]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지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같은것은 인상조정해서 실질적인 요금이 징수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고, 특히 농공단지 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시책적으로 저희들 군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농공단지 에 입주한 업주들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군에서 군정시책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주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겠다는 방향으로 국가가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국가의 시책과 발맞추어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여건상황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또 저희 수준으로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를 예측못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합니다만은, 앞으로 국가의 여건이 지금 이대로 침체할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전 시켜나갈것이나, 제생각에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리라 봅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다보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해서 안정을 되찾는다 하는 생

각을 했을때, 저도 안도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대책 강구를 위해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간의 3섹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직접적으로 군의 이익을 높일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확산해서 전개해야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술한 답변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영월이나, 정선에 비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원이 많이 있고, 또 대기업들이 보광이 들어 온다, 또 방림같은 경우에는 15분거리에 현대가 개발하는 스키장, 관광위탁단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저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어느군 보다도 이문제에 대해선 더 쉽게 풀어나갈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선 주태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십니까만, 저희들의 모든 머리를 짜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  기획실장님 부채가 270억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본군의 입장에서는 확고부동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상환할 계획대로 진행해도 어려운 문제가  
돌출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개발되니까, 지방세가 조금  
더 들어올것이다, 조금더 들어오면  
주민의 욕구 충족을 하는데 급급한 것  
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을 어떤여하에 할것인  
가하는냐는 뚜렷한 계획이 정립되어  
있어도 어려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튼구름에 구름잡는식으로 여건이 좋아  
지면 무난히 갚을 것이다, 지금 이런  
답변을 들으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  
느냐는 겁니다.

○ [redacted] 저희들 계획도  
매년 이런식으로 갚아 나갈 계획입  
니다.

○ [redacted] 갚을 계획은 갖고 있  
는데 어떠한 자원에서 갚을 계획입니  
까?

○ [redacted] 제가 예산업무를  
다루면서 아타까운것이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했습니다만 작은 예산속  
에서 이런 부담을 한다는 것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채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그 세입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세입이 감소했을때에는 주민의 욕구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애기와 같은데  
어찌 되었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  
다.

제가 아까 무리적인 말씀을 드린것은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연구를 하고 공부  
를 해서 이러한 부담이 안되고 지역주민  
이 좀더 잘 살수있는 향상될수 있는 방  
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redacted]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철저하  
게 정립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여건변화가 오  
면 갚아 나갈것이다 하면 당장 금년 94  
년도에 갚아야 할 261억3,000만원인데  
94년도 예산에 본군이 의회에 상정시킨  
예산이 얼마입니까?

○ [redacted] 380억 입니다.

○ [redacted] 380억, 그중에 지방  
채 상환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redacted] 네,

○ [redacted] 260억3,000만원을 가  
지고 나오면 얼마 남습니까?

거기다 공직자들 기본봉급을 주고나면

할것이 있습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부채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 [redacted] 여기에는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교부금에 의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redacted] 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개인들의 주택용자가 개인들로 해서 되어 있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용자를 군수님 앞으로 등기를 내어서 용자를 개인이 안고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군수님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용자금을 안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줄수 없습니까?

○ [redacted] 주택용자금이라는 것은 일단 군수가 용자를 해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재산권 문제를 인정해 주면

돈을 받기가 더 힘듭니다.

일단 용자금액이 다 상환된 다음에..,

○ [redacted] 상환을 잘 하지 않으니까, 군수가 다 안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채권확보를 위해서 군수가 하는것이지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를 개인한테로 내어 주면 자기 의무이행을 안해도 좋게 됩니다.

○ [redacted] 잘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증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보증질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후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문화공보실  
장 이철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공보실계장  
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박태영 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인사 )

관광계장 고영재 입니다.

( 관광계장 인사 )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에 기후및 정현원과, 공보현황  
문화현황, 관광지현황, 관광지시설현황  
은 별도로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저  
희 관내의 관광, 산업등 우리지역의 전  
반적인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담은

30분용 아름다운 선진평창의 VTR을 제작  
을 완료 했습니다.

향후 시간이 나는데로 위원님들께 상영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입니다.

지난 11월29일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시  
자세히 보고드릴바 있습니다만 군문화  
회관건립은 현재 종부리 산66-4번지의  
4필지에 대한 부지측량을 완료하고 감정  
을 완료해서 현재 매입중입니다.

12월14일경 설계가 남품될 예정입니다.

일전에 보고드릴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도비의 보조를 위해  
서 행정적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95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  
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  
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  
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이효석 추모사업으로 추진된 향토육성  
사업으로 가산공원및 이효석땅 건립을  
완료해서 지난 11월15일날 준공식을 가  
진바 있습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1,350평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병행하여 지난 9월2일 봉석회가 주관  
이 되어서 관내 언론사, 잡지사등이 총  
출연해서 효석백일장을 개최한바 있습  
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제1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지난9월16일날 용평면 농사놀이 팀이  
참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종합우수상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지 발간 마무리 입니다.

8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난해  
에 6개 읍면이 발간이 마무리가 되고  
금년말까지 진부면과 도암면을 대상으  
로한 면지가 발간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여기에는 지리, 역사, 체육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록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평창군민현장제작입니다.

군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군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풍요롭고 쾌적한 신평창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전문  
가와 지역인사, 학계, 문화인이 공동참  
여하여 현재 기초문안 작성을 하고 있  
습니다.

기초문안이 끝나면 위원님들과 각계각층

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결로 확정을  
해서 94년도 1월중에 공포할것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보전중에서 증부리에 있는  
송학루의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지난 노성제 행사전에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평면 면은리 일대에 (주)보광에서 현  
재 금년부터 2001년까지 스키장, 골프장  
콘도,호텔등을 짓기 위해서 전문휴양업  
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중입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스키장 사업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사님의 승인이 나는데로 인허가의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착수될 전망입  
니다.

다음은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오대산  
관광호텔도 현재 156실을 계획을 해서  
지난 7월25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지하층 바닥면 콘크리트로 종합공정 5%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있는 오대산가족호텔은  
지하1층 지상5층 100실 규모로 지난 6월



25일 건축공매 착공을 해서 현재 지상층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에 현재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면 황계리에 있는 대관령콘도미니  
엄은 기존 110실에서 40실을 늘린 150  
실로 현재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관광  
숙박업 변경등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암면 용산리에 있는 한국콘도 간이  
스키장 개발로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은 지난 10월19일날에 났고 이에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운영은 금년7월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저희 관내 18개소  
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자율관리 위원회  
가 주축이 되어서 큰 무리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청소수수료는 1,247만2천원에 입장객수  
13,656명, 차량 4,182대가 저희관내를  
다녀 갔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팸플릿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  
니다.

원색 화보에 32쪽 분량으로 3,500매를  
제작을 해서 저희관내를 찾는 관광객및

주요 인사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이  
용한 TV유선방송 가능지역에 대해서 행  
정예고및 공지사항을 수록한...,

○ [redacted] 공보실장님 업무  
보고 설명은 생략하여도 좋습니다.

○ [redacted] 그러면 '94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위원여러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유선방송 허가에 관하여 여기 자  
료에 보니까 업자가 읍이면 읍, 면이면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집단마을 몇  
개 마을 신고를 하던지 허가를 해서 유  
선 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때에 참고를 해서 집단 소재  
지만 해 줄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있는  
현지마을도 함께, 신청은 안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유선방송을 볼수 있도록 이  
렇게 허가를 해 주어야지 이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의 자기 이익권만 주장을 해서 시설비를 적게 들이고 , 이익주의에서 허가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유선비를 월 얼마씩 징수를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까? 이것은 허가의 부대조건이 아닌가요, 방송비 수납하는것 말입니다.

○ [redacted]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 [redacted] 월3,000원으로 징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redacted] 저희 관내는 난시청 해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2,0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2,000원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내었는데 3,000원으로 받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임의로 더 받는다면....,

○ [redacted] 그 사항은 전체적인 유선방송사에 대한 실사를 해서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redacted] 조사를 해서 3,000

원을 징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원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허가 해주는 사람이 허가증만 내주고 그사람들이 임의대로 법을 위배하고 , 그외의 시설관계도 그렇고 제대로 방송을 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 [redacted]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선방송료는 2,000원에 시청료 1,500원 포함해서 3,500원으로 징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시청료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유선방송에서 시청료를 같이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비만 징수하겠지 시청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그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redacted] 그 사항은 분명해야 할것이고, 이사람들이 실지로 유선방송을 하는것은 TV가 방송이 안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해야 하는데 복사만 해서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할때에는 주민들에게 유익한것으로 복사를 해야 하는데,

저녁에 나온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선전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redacted]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다음에 효석추모 사업이라던가 가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가산공원 조성은 조성한 상태로 들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현재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효석 추모사업으로 가산공원을 조성 하고 동상을 건립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단계

에서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년차사업으로 내년도에 화장실등 기반시설, 일부 조경사업을 포함 해서 보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93년도 추모사업 효석백일장을 하는데 봉석회에서 그간에 계속 하고 있던것을 처음으로 본 예산에 1,0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추모사업비 보조해 주는것을 40%나 삭감을 해서 60%밖에는 보조를 안해주었는데 예산절감을 이런데까지 해서 이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공보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 [redacted] 그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내 행사를 도전역 전국행사로 확대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추경때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확실한 얘기를 합시다.

94년도 예산서가 나온것을 보니까 1,0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1,000만원을 계상을 할때에는 93년도에 1,000만원을 상정을 했다가 400만원을 깎고 600만원을 주어도 그 행사는 치뤄지더라 그러니까 불가상승이러던가 앞으로 확대보급해야하는 차원에서 한400만원만 더줘도 된다는 생각으로 1,000만원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나마 1,000만원을 넣어놓고 정부에서 절감예산하라고 하면 40%나 50% 삭감을 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는것입니까?

○ [redacted] 금년도에 치뤄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절감을 안한다는..

○ [redacted] 저희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절감할 의사가 없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93년도에 신문구독료하고 홍보책자로 해서 예산 6,500만원이 93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중앙지가 504부, 지방지가 583부,

그 중앙지는 지금 서울신문입니까?

○ [redacted] 네 그렇습니다.

○ [redacted] 그 서울신문이 오지라던가 시내권내에도 신문이 아니라 구문으로 되어서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보지도 않고 중앙지가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예산부수가 중앙지가 504부라고하면 거의 반반 되는데,

○ [redacted] 당초에 504부였던것을 1회추경때에 300부로 부수를 줄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중앙지가 잘보지도 않고 늦게 들어가고 해서 아주 불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신문은 없애고 나머지 부수를 중앙지에다 증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redacted] 이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신문이 중앙신문지의 유일한 신문으로서 10여년전부터 행정에서 구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조금더 하겠습니다.

○ [redacted] 실장님 서울신문에 대한것을 다시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다 있습니다.

또 라디오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던가 모든 뉴스는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뉴스는 극히 있다하더라도 극소수이고 그것도 원주MBC나 우리 평창판내에는 평창뉴스는 극히 적은 상태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민중에 지역의 뉴스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뉴스는 이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지방뉴스는 지방신문외에는 알방법이 없습니다.

갖은 없는 예산을 쪼개서 주민들에 구독

료를 주어서 구독할수 있는 길을 연다면 지금 광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지 확대보급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한정되는 것이고 하니까 서울신문을 줄이고 지방지에다 확대보급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실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redacted] 금년도에 예산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내년도의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하신 말씀을 참작을 해서 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신문구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문통신업무를 맡고 있어서 잘 압니다.

요즘 우편으로 나가는 신문이 배추장사들 배추싸는 것으로 하는것입니다.

하나도 보지않고 그런데 금년도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여러종류가 있는데 우편으로 나가는것이 몇부입니까?

○ [redacted] 우편으로 나가는것은 서울신문이 평창군내 전체 300부, 강원일보 400부, 도민일보 283부

가 나가는데 이중에서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시가지에는 당일 배부가 되고 오지에는 우편으로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내권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해서 아침에 받아 보는데 우편으로 가면 그다음날 아니면 2불지난 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3-4일 후에 갑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지도 않고 농사하는 분들 바쁘니까 집배원들이 마루에 던져놓으면 그냥 모이게 됩니다.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준비만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다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edacted] 현재실상을 파악을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감사합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현황을 보면, 모든 문화제자료를 보면, 모두양호합니다.

그중에 대화면에 이병호씨가 살고 있는 집에 가보면, 집주인은 이장근씨 집입니다. 자료에 보면 불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보면 도깨비 나올까 겁납니다.

수리도 못하게 합니다.

문화재 관리보호측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원해주든가, 가보면 딱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계획이 있습니까?

○ [redacted] 이장근씨 가옥이 도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가치가 미흡하여 강원도에 문화재 해제 신청을 할까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보존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여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금당계곡을 보면 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redacted] 저희들이 18개소에 비지정관광지에 화장실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극히 어려운곳을 판단하여 화장실 5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급한곳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관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redacted] 8월 25일 체결하여 현재 설계중입니다.

○ [redacted] 이 사업이 불투명한데 설계부터 합니까?

○ [redacted] 연차별로 중앙 또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준비를 부담하여 마무리 하여야 할 의지로 있는 것입니다.

봄부터 5필지에 대하여 기공 승락서를 받아 본인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지불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용역설계를 주어 설계용역 계약을 한것입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내에 8개읍면이 있습니다.

8개읍면 지리적 여건을 볼때, 사실 종부리에 건립하여 군민 100% 이용할수 있

는지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평창군에 예술문화가 얼마나 잠재되어 있고, 문화회관에 막대한 53억이라는 예산을들어 건립을 했을때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지 기본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redacted]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립부지가 왜 종부리66-4번지가 되었는지는, 지난 3월 5일 8개읍면 번영회장과 군단위 지역인사를 포함한 14명의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동 3월12일 회의한 결과 현재 종합운동장을 연계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했을때 군민이 이용하는 효과가 있겠는냐는 것입니다.

○ [redacted]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을때 활용가치가 나오겠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했을때에 그값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조금전에 말씀 올렸지만, 전국단위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은 문화체육부

의 의지이면서, 특히 강원도 단위에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는곳이 본군을 포함 1~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0년대를 향한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군단위 각종 종합예술, 민속문화행사를 저희 군에서 강원도의 행사를 유치했을때에 그만큼 공간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평창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 전국단위의 많은 행사를 생각 하십시오.

예를 들면 택시에서 합창경연대회를 치렀지만, 저희군이 합창경연대회를 한다 할때 치를 장소가 없어 개최를 못합니다.

그러한 각종 행사를 유치할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면 학생, 노인 전시민이 함께 즐길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앞으로의 차원높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 [redacted] 강원도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 [redacted] 삼척시, 정선, 영월군, 춘천시, 홍천군은 내년 상반기

에 마무리 되며, 원주시.원주군등 몇개 시군을 제외한 전시군이 건립또는 건축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 평창군민이 이용하고 또한 군내의 문화예술이 발전할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평창군으로 보아서는 할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이런것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한다는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실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원, 자동차, 소형, 대형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잘되어 있는데, 어떤곳을 보면 아직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는 진입로, 화장실, 자리가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평창군내에 있는지역을 확인해서 앞으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으면 합니다.

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redacted]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redacted]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redacted]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금년도까지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여 내년도에 시급한 화장실 5동을 신축을 하고 이에 따른 제반 안내판, 시즌에 필요한 비닐오물주머니, 읍면의 청소차량의 주1회를 주2~3회로 확대운영하는 방안, 행정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보다 더 나은 비지정관광지 활성화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예술회관문제입니다.

지난번 평창군 종합운동장을 건설할때 국도비 4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8억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던 것이 몇배의 예산을 들여 몇년에 걸쳐 준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유형인것 같습니다.

국비를 얼마주고, 도비를 얼마를 주는지 정확하게 예시가 되었을때 본군의 예산은 얼마큼 허용됩니까?

그래서 몇년동안 걸려 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막연하게 도비 5억준다고하여, 시작하는 사업은 본군에서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우리군의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계획을 세워 예산이 반영되었을때 시작을 해도 성공 여부는 희박해 지는데, 우선 도비 5억준다고 시작하여 엄청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이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 11월 27일자 강원일보에 송학부 현판식을 했는데, 현판을 공보실에서 띄어다 보관한 것이 맞습니까?

○ [redacted] 지난 노성제 행사를 할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판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젊은이들이 고리를 떼어 갔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보완하여 훼손이 없도록 다시 보완하려고 잠깐 떼어갔습니다.

○ [redacted] 예 알겠습니다.

○ [redacted] 비지정 관광지를 18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청소관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으므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부분별하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지정되어 있는 비지정관광지에 들어가지않고 인근에 있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지에 가서 오물을 많이 버리고 가는 오히려 전지역이 쓰레기나 오물로 인해서 오염되 가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문제점이 있고 하는것 같고 자료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중에 1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1백명 미만되는곳이 4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지정할 필요가 없지않나 싶습니다.

1백명도 안되는 곳을 지정을 해서 관리원들이 나와서 수수료를 받고 수고를 합니까?

자료에 보면 율동리, 중리, 주진리, 그리고 도암면 유천리 같은 곳은 자료에 나타난것을 보면 1백명 미만입니다.

이런곳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요원들이 노인회나 관리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보수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수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수수료를 많이 징수를 했을때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여유가 있을때 관리 자금으로 조금 주는것이 없습니까?

○ [redacted] 청소수수료 금액은 군이나 읍면이 다시 재납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을 기금내지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증식대응을 지급하고 환원 투자하겠끔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니다.

○ [redacted] 박문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위치선정을 하실때에 8개면의 번영회장님들과 14인이 다 모여서 했습니까?

○ [redacted] 지난3월12일날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 [redacted]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 [redacted] 참석자 명단은 없고 위원님들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니다.

○ [redacted] 번영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

○ [redacted]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redacted] 진부 번영회장님께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참석한적도 없다고 말씀들었는데 실장님 답변은 번영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위치선정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redacted] 추진위원님들중에 읍면 8개읍면 번영회장님이 포함되어 있는것이지요, 회의록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평창군에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도암면, 진부면 면지발간을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작업을 할 예정인데 공보실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자료수집을 한적이 있습니까?

○ [redacted] 이것은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별도 만드는 분을 위촉을 해서 그분이 관내 관외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

니다.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용평면의 면지가 나온것이 내용이 아주 충실치 못하다고 주민들이 여론이 많습니다.

이왕 하실때에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충분한 자료를 지역에 가서 수집을 해서 완벽한 면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내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식 행정계장 입니다.

( 행정계장 인사 )

김일래 서무계장 입니다.

( 서무계장 인사 )

신영선 감사계장 입니다.

( 감사계장 인사 )

김영석 민원처리계장 입니다.

( 민원처리계장 인사 )

이재건 통신전산계장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인사 )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과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강원  
가꾸기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주민등록전산화사업, 행정쇄신업무추진,  
공무원직장교육,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 , 친절365일  
운동, 대민행정 10대시책, 행정통신전산  
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내무  
과는 5개계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에 8명, 서무계 7명, 감사계 2명,  
민원처리계 4명 , 통신계 6명으로 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각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현  
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계에서는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정.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  
호적및 주민등록관리, 반상회 운영지원  
기타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합니다.

서무계에서는 각종 회의및 행사, 의전  
관리, 공무원 복무단속,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및 비위예방대책  
추진, 민원업무처리 상황검열, 기타 감  
사업무에 관한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접수합니다. 민원편의시책수립시행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전화시설유지관  
리,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시행, 기타  
행정통신및 전산업무에 관한사항을 말  
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내무과장은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  
하게 그때그때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본청의 공무원들, 또는 읍,  
면사무소 공무원과 사업소의 총 공무원  
600여 공무원의 93년도에는 사기가 상당  
히 저하되어 있다. 또는 어떤 창의적인  
열심히 하는 힘을 잃은 해다라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의 행정주사보 한사람  
이 어쩔던지간에 자살을 했고,  
또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몇일간 계속  
음주를 하고 돌아다니다 일요일날 자전  
거에서 떨어져 사망을 한 대화면의 어떤  
계장인 있었는가 하면 사무관 한사람이  
전임지의 업무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또 행정주사 2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또 구속이 되어서 형사입건이 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10여명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  
서 검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아서 본군  
의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몇분이 가서  
담당검사에게 사정을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지방에 공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본군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해서 뒤숭숭한 일도 있었고, 이렇게  
91년,92년보다 93년에는 뒤숭숭한 일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복무관리나 인사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자의 안일  
한 생각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몇사람의 공무원때문에 선량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또는 평창군민  
으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은 한해였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치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해 보다는도 공무원  
들이 사정바탕에 많이 시달렸던것은 사  
실입니다.

공보실에 있는 직원, 조영상직원도 그렇

고 대화에 있는 이계장의 음주로 인한 사망도 그렇고 물론 인사는 저희들이 상당히 균전체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 ~~사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주셨습니다만은 공보실에 근무하던 고 조영상주사, 지금현재 동서되시는 분은 남동선씨라고 주사보라고 알고 있는데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이냐면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일이 있다.

다 못하겠다 하는데도 이런일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께서 광명시 616국의 1783번에 이사를 가서 있습니다.

옛날에 그분께서 고 조영상씨의 처가 봉평우체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알고 또 고 조영상씨의 장인이 봉평우체국에 근무를 해서 잘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광명시에 전화틀 연결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고 조영상씨가 사표를 첫번째 냈을때 공보실장에게 냈습니다. 공보실장님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사표가 내무과장님께 까지 와서 폐기처분되고,

세번째는 공보실에서 동서가 없었는지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사람이 민방위과에서 2년7개월을 90년도12월부터 93년7월까지 2년7개월을 근무 했고 공보실에 가서 2개월 근무하다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얘기하는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잘아는 과장님을 찾아가서 나는 공보실에 근무를 못하니깐 다른곳으로 보내 달라고 그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고 또 사표를 냈는데 왜 이것을 처리를 안했는지 궁금하고,

본위원이 인사법령집을 복사를 해 왔는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칙에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는데 본군에도 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1인 위원5인 내지 7인으로 구성되어서 고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반드시 본안이 고충처리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다음

서류검토를 하고 본인을 불러서 위원들이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만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 병사, 또는 복무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개정을 92년12월26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이내에 있는 공무원도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많이 전보를 해줍니다.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예를들어 산업과에 있다고 내무과로 올라가도 이것은 1년 이내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 행정계에서 서무계로 가는것은 이 규정을 보니까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있다 산업과로 간다면 1년이 지나야 가는데 왜 조영상 주사는 그렇게 원을 하는데 읍면으로 보내주던

가 해야 하는데 그 사표를 자주 폐기처분 했는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본인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을 안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복무관리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고충처리를 열어 줄테니까 내라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조영상 주사보가 한번은 찾아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보실 근무가 적용이 안된다, 그러면서 좀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600여 공무원의 인사를 관리 함에 있어 일단 인사를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면 잘 적용을 1달내지 2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한 2달동안은,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인사 예라던가 이런것을 보더라도 그런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정도는 업무를 익히면서 적용을 하도록 한적은 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그다음 3번째로 각읍면사소, 평창군청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사무소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창군청의 복무관리와 인사관리는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창군내에 있는 읍면장들이 학연에 의해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탄면장 지병환 씨만 아니고 또 진부면의 면장님은 다른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전부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또 부면장님은 전체 어떤 학연에 의해서 7개면의 부면장님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지에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빛을 못본다. 또 어떤 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수년에 걸쳐서 팽배합니다.

물론 복무관리와 인사관리는 인사관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인사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내무과로 보직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제 스스로가 조그만 군에서 서로 읍면간의 지역문제로서 인사문제로 지역문제로 따진다는것을 제일 싫어하는 과장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타시군에 한4년동안 근무를 해보았고 또 평창읍이 고향입니다만 저는 다른곳에 가서 학교도 다녀왔고 여러가지 객지생활을 해봐서 그런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과장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무과장 보직 이후에는 능력있고 평창군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는 발탁을 해서 기용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공무원을 20몇살에 들어오면 그때는 나이도 젊고 누구나 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고 또 소신있게 용기있게 할려고 합니다.

행정주사보, 행정주사 그렇게 나이도 많고 가족도 많고 하면 자연 태만해지고



더 하기도 싫고 느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나이많은 행정주사, 그분들이 어떤면에  
서는 태만하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속된말로 이구석 저구석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30- 40몇살정도때에는 평창군  
을 위하고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천대를 하고 능력  
이 있다고 해서 나이 몇살 젊은 사람들  
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보직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대공무원이 안된 사람이라  
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분들은 정년도  
얼마 안남았고 또 젊어서 평창군에서  
고생도 하고 강원도에서 각처에 다니면  
서 고생한 분들이 여러분 있는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을 대우할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內務課長 김○○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군전체 인사를 하다보면 어려운 자리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해내기 어려운 이런것도 감안이  
되야 합니다.

앞으로 오래되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는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監査官 김○○ 그다음 감사서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를 많이 받아 봅니다만  
이것 한편으로 사무감사 아니라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증빙서도 있어야 할것이고 삼각대사를  
해서 불러면 증빙서 요구를 했는데 이  
내무과 자료에 보면 증빙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보는것으로 끝나지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 監査官 김○○ 여비지출 결의  
서 라던가 이러한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얻은 것으  
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監査官 김○○ 마지막으로 92년도  
93년도 내무부나 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및 회계감사를 한 감사지적사항  
처리 전말에 대한 복사를 본위원이 요구  
를 했는데 그것은 92년도에 주태원 위원  
께서 요구를 하니까 비밀이라고 하셨는  
데 금년에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간단한 유인물로만 표시를 했는데 그것

은 비밀 관계서류가 아닙니다.  
 본위원회도 몇일전에 보안관계규정에서 한  
 번 보았는데 금년에도 자료를 안내주시  
 고 간략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기관감사 처리전말  
 은 언제 한번 국무총리 훈령인가 해서  
 참고해서 보존기간을 연장해서 참고하  
 라는 것은 보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출을 안하셨는데 왜 안하셨는지  
 비밀입니까?, 내무과에서 바쁘셔서 못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공무원 전체  
 개개인에 대한 신상문제가 전부 있어서  
 개인에 대한 피해도 있고 해서 ,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감사계에서 열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비밀은 아닌것은  
 알겠습니다.  
 신상문제로 인해서 이해는 갑니다.  
 고맙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중 진정건의등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건수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건별로 어떤내용의 진정이다 그런내용은  
 없습니까?

○ [redacted] 진정내용을 말  
 씀 드리면,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있  
 으니까 김종영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  
 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월19일날 국토포장사업에 따른 농민  
 피해 진정 방림 운교리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2월4일날 기존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 [redacted] 과장님 서면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 [redacted] 네 그렇게 하겠  
 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 [redacted] 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대학  
 은 서울이라던가 외지 전국단위로 나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  
 어 있는데,

고등학생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군내에  
 고등학교에만 지급이 되어 있고 이곳출  
 신이 타지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나가서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지급  
 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에 균형이 어긋난다고 생각

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일단은 이지역 출신이 외지에 나가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다 라고 하면 선발규정에 맞으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여기는 왜 안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만 지급을 해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심의할때에 이사님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외지에 나가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강일여자 고등학교에 1사람 있고, 강릉상업고등학교도 있고, 봉의고등학교도 있고, 복원여자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 한테도 금년 하반기 부터는 지급을 했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앞으로 시기가 되면 읍면으로 사전 홍보가 되도록 전부 알아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redacted] 반상회보 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본군의회에서 임도시설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훼손및 내수면양식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평창군포상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군민의 날 행사때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의 여론을 집약해 보면 "군민의 날에 포상을 받는 수상자가 군민이 공통되게 공이 인정할수 있는 대상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빈축을 받지 않을정도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함으로 해서 상에대한 신뢰성이나 타인의 모범이 되는 특례가 별로 없다" 하는 여론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송정리 토석채취와 관련되 적발된 공무원은 지금현재 징계의결하고 처분중에 있는데 산림과에 서태일은 견책처분이 될것이고, 박종철은 횡성

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횡성에다 징계요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처분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올것 이고 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엄기종, 과장, 이동원 이사람은 강릉에 갔는데 이사람들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성제에서 시상한 군민 포상문제는 심사위원님이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대표, 부군수님이 심사위원 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여론이 없도록 심사를 더 신중하게 하면서 저희 들이 4개부문을 시상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부분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체육에서 우리군의 명예 를 높이는 그런분이 있으면 문화부문에 서 마땅히 타야 하는데 심사에서 탈락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토록 상정해서 문화와 체육부분을 분리해서 고루 시상을 받도록 할 계획 입니다.

○ [redacted]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뚜렷한 공적사항에 유무를 분명

히 가려서 당해년도에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하는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또 유보를 해 놓았다고 다음해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면 꼭 한사람을 할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을 해도 좋고,

뚜렷한 공적이 있을때에 시상을 해야지 조례에 정해져 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해서 뚜렷한 공적이 없는 사람을 포상을 했을때에 주변에 잘알고 있는데 그사람이나 나나 거의 비슷한데 그런것 을 가지고 포상을 한다라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개선책을 말하 는 것입니다.

○ [redacted] 잘 알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계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이후에 처리 비율이 다소 높아 졌습니다.

그중에 복합민원이 약 200여건 나와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대부분 외지 자본가들이 시 설투자를 하기 위한 민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좋아진것으로 얘기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외지에서 이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부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분들을 관련부서로 잘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짧은 시간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배려가 더 되어 하지않겠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가 모처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깐 조금더 노력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쇄신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4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노력을 하시는 기미를 볼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처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회의도 조금 빠지는 것도 같고 남은기간동안에 행정쇄신이 원활하게 되서 여러가지 주민에게 불편이 주는 사항들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서있죠?

○ [redacted] 네,

○ [redacted] 자료에 보니까, 89년도에 1건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는 한건도 없습니다.

예산까지 수반되서 공무원들이 창안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 등한시 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창안제도에 대해서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대책만 세워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창안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행정쇄신은 김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6개월동안은 상당히 활기를 띄어서 많은 과제도 찾아내고 했는데 처음보다는 식어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증앙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증앙에서 여러가지로 법도 개정해야 할것이고 예산도 세워야 할것이고 지금 시군에서 너무 올라가니까 과제 발굴만은 이상으로 되었다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더 과제가 실천될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

야 하는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창안제도는 사실 2-3년 동안에 운영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인사 특전을 하고 포상을 해서 창안자에게 특별히 시상금도 예산액에서 주고 해서 활성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광문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401천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10% 절감을 해서 3,700만원 이것을 각읍면별로 지급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김영환** 바르게살기 보조금을 읍면별로 지급하는 내역은 드릴수 있습니다.

○ **김영환** 바르게살기 이름은 좋은데 무슨일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별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읍면이 전부

1,584만원인데 읍면별로 배정된 내역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김영환** 박용태 위원입니다. 제가 각읍면에 기능직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 많은데 직원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가 많은데 읍면별로 이동이 없습니까?

○ **김영환** 그사람들은 대화면이면 대화면에서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한다던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방림면에서 기능직 연령이 도래되어서 연장신청이 온것을 면장님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반발을 해서 그당시 봉평면장이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간적이 있는데 그사람 나름대로 정년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대화면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를 주겠습니다.

○ **김영환** 교육을 시키던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김영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행정사  
무가맛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사회진흥  
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식 진흥계장입니다.

( 진흥계장 인사 )

김용수 개발계장입니다.

( 개발계장 인사 )

김근수 건전생활계장은 설악수련원에서  
생활체육관계자 세미나에 참가 했기 때  
문에 저회 직원 이상진입니다.

( 직원 이상진 인사 )

유인물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  
니다.

과정원은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11명이며 기술직은 토목직이 2명이고  
고용직은 경노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2번째 새마을관련단체조직 현황입니다.

새마을지회에 남경우 지회장을 비롯해  
서 김남기 협의회장님, 이순남 부녀회장  
님, 이종환 문고회장님 , 새마을지회에  
상근요원으로 6급상당의 사무장 김상남  
씨와 8급상당의 김영옥 여직원해서 2명  
이 근무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조직육성 현황입니다.

우선 체육단체에는 정호돈 군체육회장을  
비롯해서 김수돈 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축구를 비롯해서 씨름까지 9개 협의회장  
님이 계십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총44개중에 다른시군과 조금 특이한것은  
스키장이 1, 골프장 2, 수영장 1, 골프  
연습장 1, 볼링장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키장은 용평스키장이 되겠는데  
면적은 77만여평이 되고, 슬로프는 18면  
이 되겠고, 리프트는 15기, 스키렌탈이 1  
동, 연간이용객은 50만명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와 일반 골프장이 되겠는데, 연간 이용객은 55,000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업무추진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사회진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여비에 의한 출장복 명서를 붙이지 않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복명서를 소상하게 붙여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탄면에도 시가지가 노후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2, '93년도 금년에 여러가지 본군의 재정규모 때문에 시가지정비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또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봉평의 도움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정보고회라고 각면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봉평면의 시가지 정비사업이 상

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94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 또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금액으로 얼마가 투입되었다는것은 말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는데 93년도 금년에 무슨 공사를 하셨는지 그것만 2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평 도움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9, 209가 되겠는데 109는 금년이고 209사업은 내년입니다. 109사업에 건물 및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확장등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보상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생략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보상가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 기타에 대해서는 80%는 보상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것이 면사무소 중학교 나가는 중앙통 권혁민씨 덕이 되겠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해야 할 것이 상하수도과 확포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일부 보상이 덜 되었고, 사업이 내년도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서 공사만 벌려 놓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 어려움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해보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본 뒤에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 문제, 통신등 모든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산관계는 금년에 약 15억이 들었는데 10억은 군비, 5억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겠는데 다는 집행할 못했습니다.

80% 집행을 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물론 기반시설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제 추측에 현재 까지 판단해서 26억이면 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국도비가 최소한도로 7,8억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군 재정이 송정택지나 여러가지로 열악한 상태이고 도암면 수해복구가 나서 내년도 할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내년도 도움정비가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redacted] 광문춘 위원입니다.

플보조금 내역에 역도 창단 보조금 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씨름부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도부 창단은 본위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역도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각종 체육대회가 학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도 체육대회가 있고 군에서 주최하는 엘리트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또 생활체육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7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저희군보다 군세가 약



하는 과정은 의례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진흥과 외에 타과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 폐도, 폐구거, 이런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만 하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도움정비가 주민으로부터 불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된 상태이니 까 더군다나 어려운 사업중에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금년은 다 갔 습니다.

용지보상의에는 실제 아무런 실적이 없 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불편 사항을 생각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내년 도로 이월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생각해 지지않고 본군의 예산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사업을 지연시켜서 자원확보가 어려운점을 자연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때 94년도에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 특별한 대책은 본군

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 도움정비를 하는데 국도비를 얼마만큼 얻어다 이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나 하는 계획서를 수립하는 바람에서 특별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간단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이라고 하는것이 얼마만큼 최대한인지 그것도 의문점이고 94년도에 최대한 17억을 확보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과연 94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얼마만큼 계상을 했는지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부진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다음 행정조치는 구거와 도로는 별도로 의회에 통보도 했습니다만 다른 타과에서 협조가 안된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주관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어찌 되었건 구거는 다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특별지원대책, 국도비, 군비 확보사항은 국도비는

국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이 12월2일자로 통과가 되어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도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가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여기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도 국도비를 합쳐서 5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실무부서에서는 도의 실무부서와 7,8억을 요구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합해서 7,8억이 들어오면 군비 17억정도 해서 25,26억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간단히 자료를 내놓았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이태명 도의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도의 사회진흥과에 가서 국도비를 많이 따도록 외교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동락 의원님은 지금 일본에 가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못드렸는데 혹시 보시면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 [redacted] 군비는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 [redacted] 군비는 현재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것을 제가 모르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야 ... ,

○ [redacted] 아니, 의회에 94년도 본 예산이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국도비 포함해서 26억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에는 자료에는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

국도비 포함에서 25,26억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내무세 교부세가 내려 오니까 나머지 잉여자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 [redacted] 1억을 계상을 했으면 17억중에 16억은 어떻게 조달을 할것이냐는 안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94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 [redacted] 저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군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예산실무부서하고도 최대한 확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redacted] 안되면 95년에 가서

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시겠습니까?  
도움정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  
고 계시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서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본위원이 이문  
제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썼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도 보면 군비1억만  
달러, 장난도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의지가 없으면 못하겠다던가 결정  
이 나야지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활동망둥 주민들 고충만 더하게 되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redacted]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전용경기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라고 알고있는데  
완공이 되는지의 여부와,  
지금현재 산을 파헤쳐 놓았는데 앞으로

방치를 해둔다면 인근에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책  
임을 맡아 관리를 하는지 관리기관이 결  
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redacted] 크로스컨트  
리는 작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금년  
까지 마무리 되는 단계인데 제 판단으로  
는 95%정도에 와있습니다.

모든 토공사업은 오늘,내일이면 끝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계로 조달청을 통해서 부산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어  
려움이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산을 파서 코스를 만든것은  
산을 판 걸면에는 시드스프레이라고 해  
서 잔디풀씨를 처리를 했는데 지적해주  
신것과 같이 저도 다소 홍수기에는 피  
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임도처럼  
산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피해가 별로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질도 마사토이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관리  
책임부서는 도와 절충중인데 사업바자채  
가 19억1,500만원이 국도비 50%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1안이 용평스키장, 제

2안이 감사원총장, 제3안이 평창군에서 관리 하는것으로 도에다 협의를 했는데 사후관리비가 연간 1억정도 들어갑니다. 도체육지원계와의 관계는 일단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어떻게든 용평에 사후관리비조를 주고 넘기는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redacted] 사후관리 문제만 넘겨 주는것이지요, 관리문제는 군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1년내내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판단을 해보니까 사무실 사람을 5,6명을 써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따지니까 연간 1억정도 됩니다.

군에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감사원총장이나 용평리조트에 관리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과 도와 협의한 끝에 그래도 용평리조트에서는 모든 장비를 쓰는 인력이 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용평에서 맡는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한체육회, 도, 평창군에서 차후에 협의회를 가져서 용평리조트측으로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직장 체육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플보조 보상금에서 76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 거의 1억정도가 지출이 된것 같은데 경기 성적을 보니까, 3위를 몇번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은 출전도 할수 없는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고 그래서 이번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때도 평창군의 실정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 선수들이 평창군 출신이 한사람도 없고 또 평창군에서 지역출신 체육인들을 육성할수 있는 체육종목도 많이 있는데, 이 지역하고 거의 상관도 없는 씨름이 어떻게 군직장 팀으로 육성이 되었는지 향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씨름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해체를 하고 이지역 출신 체육인들을 육성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다시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도 약 1억이상이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자료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는데 먼저 평창군이 직장 씨름팀을 창단한 것은 먼저번에 여자 테니스가 있었는데 도대회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 체육회로부터 평창군체육회는 씨름팀을 맡아라 하는 협조사항에서 말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씨름을 맡게 된 동기는 진부에 중고등학교 씨름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을 장래에 키울것으로 해서 맡았는데 그후에 진부 씨름팀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부득불 도체육회와 평창군체육회간에 입씨름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안말을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맡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 [redacted] 제가 자세히

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체육회장이 지사님이신데 강원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22개 시군모두다 한종목씩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여자 테니스를 맡았는데 여자 테니스를 평창군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 [redacted] 그러면 지금이라도 씨름을 못하겠다고 하면 종목을 바꿀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 [redacted] 조금 어렵습니다.

○ [redacted] 왜 어렵습니까? 그때는 못한다고 해서 바꿔주었는데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redacted] 그 경위는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아무리 도지사가 애기를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종목을 맡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redacted] 그래서 지금까지 2년을 맡아서 해보니까 성적도 좋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도 많이 쓰고 이 지역의 사람을 못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래에 앞으로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창군 실정에 맞게 어떤팀이던지 대체 내지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dacted] 과장님 이자리에  
확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사항인데 결과를 분석해봐도 그렇고 팀을 만들때도 상당히 여의치 않는 점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 아까운 예산을 별로 효과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이자리에 확고하게 앞으로 과장님이 앞장서서 팀을 해체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팀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이자리에 할 수 없습니까?

○ [redacted] 그것은 도 체육회장과 군체육회의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은 못하고 어찌되었던 위원님들이 지역여론이라던가 또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 [redacted] 그렇다면 군에 체육팀 단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데...

○ [redacted] 제 의견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씨름팀의 단장이지만 평창군 체육회장님으로서만 결정이 안되고 도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체육회장, 단장님과 도와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의 의견입니다.

○ [redacted] 좋습니다. 그러면

○ [redacted] 도와 강력히 얘기를 해서 바꾸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와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평창군이 의무적으로 체육팀을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오셔서 봐야 여러가지 의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redacted] 아무리 강원도 체육



진흥을 위해서 각시군에서 각팀을 육성  
을 해서 강원도의 체육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이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하고 예산수반능력도 감안이 되어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제는 지방  
자치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만 핑계  
떨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고려를 해서  
예산문제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 도의 눈치만 보고 도지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 안시키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방법을 찾으  
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네 알겠습  
니다.

○ [redacted]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용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약16  
회 정도 사용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동안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6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뒤에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서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이 아까운것  
아닙니까?

기왕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해 놓  
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지역  
의 체육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하지 않  
겠느냐는 의견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승복 청소년 수련장에 쓰레기  
장이 있는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날려서 지역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이승복 청소년 수련장  
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 [redacted] 이승복기념  
관 시설관리는 지금까지 작년 92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  
도 5,000여 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94년도에 도비 지원내지는 준비를 들여  
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dacted] 가급적이 아니라 거  
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용하는 것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년도에는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

을 저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그리고 용평면 백옥포리 청소년 수련장 시설 설치 추진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용평면 백옥포리 영동2터널이 되는데 우리쪽에서는 장평에서 약 2km정도 오른쪽 산에 13,14만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체육청소년부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37억을 들여서 대단위 청소년 수련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중요한 시설로는 건물로 숙박동 연수동, 관리동이 들어가고,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배구장, 씨름장, 자연체험기둥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군에 문화체육부 예산이 7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15,16만평 들어가는 부지중에서 이미 그분들이 허구만씨가 경영하는 초지를 인근 국도, 국유림하고 매각을 해서 12만평 정도는 샀고, 3만여평을 저희군이 매입을 할수 있도록 7억이 저희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땅사는 관계는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땅사는 문제는 묘지가 2백기가 됩니다. 그것만 사면 됩니다.

금년에 나라감정, 아세아 감정, 그리고 강릉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감정결과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사지를 못했고 94년도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돈을 받을수 있도록 감정가를 다시 조정해서 할수 있도록 체육부와 협의를 했고,

○ [redacted] 94년도 투자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redacted] 94년도 투자계획은 체육청소년부에서 30억을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30억은 이미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급한사업을 먼저 하는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부는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내년에 30억을 확보할것으로 봐서는 3년내에 할 계획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94년도 범죄없는 마을 수상에 대한 증빙서가 제출이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 했는데 유인물을 보면 지출결의원인행위에 대한 지출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전부 지저분해서 검토를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다음 농어촌 잘살기 운동 상사업비 이것이 당초 93년도 예산계정시에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 요인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마을지회에 각읍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나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이 운영비가 하등의 큰 효과가 없다 회의도 잘 안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돈을 어디에 쓰는지 연중 얼마가 나가는지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108페이지는 복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118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증빙서를 제가 알기로는 첨부하라는 얘기가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며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그다음 농어촌잘살기 상사업비 집행은 92년도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그때당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당시에 시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세워도 좋다고 해서 의결과정에서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읍면에 지회로 운영비를 내주면 지회에서 읍면 협의회에 배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적절히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하신데로 제가 추후에 읍면 내지는 군을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농어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 내용은 여기 나와있는데 시책종료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 [redacted] 그때당시에

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나중에 안세  
울수가 없어서 세운 것입니다.

○ [redacted] 이상입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의 지출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된것을 보면 보디빌딩, 조정 두가지  
종류는 평창군에 없지 않습니까?

○ [redacted] 도민체전이  
나 모든체전이 그렇습니다만 35개 종목  
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점수 승산이  
가능한 종목에 나가는데 보디빌딩 선수  
는 진부에 있는 선수로서 관동대학에서  
하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  
을 해서 우리가 점수를 땀고 춘천군  
이나 명주군에서 기 연습을 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 선수로서 발굴을 해서  
출전을 했고 점수도 땀고 예산지출도 된  
것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입니다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지방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  
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최호영 입니다.

( 세정계장 인사 )

경리계장 강태영 입니다.

( 경리계장 인사 )

관재계장 김장래 입니다.

( 관재계장 인사 )

조사평가계장 이영범 입니다.

지적계장 진연달 입니다.

( 지적계장 인사 )

저희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정원 35명중 기능직 1명이  
결원이고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 기능직 16명등 총  
34명과 일용직 15명등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경리계와 관재계에 정규직  
이 한명정도 적은 증원이 되어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분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세정계는 지방세 부과정수, 체납 처분, 세외수입 부과정수, 금고관리및읍면 자금배정. 다음 경리계는 세출예산의 경리, 물품출납처분,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다음 관재계는 균유재산의 관리및 취득 처분, 국도유재산 관리, 청사, 관사관리, 차량및보일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사평가계는 법인지방세 조사, 토지 등급 설정,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계는 지적공부보관관리, 지적 민원처리, 지적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면주요추진사항과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지방세및 세외수입목표대실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전에 신문에 미징수액이 8억 얼마가 나왔는데, 현황에 보니까 조금 줄은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미징수액이 누계로 넘어오다보니 이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전에 지상보도를 보니까 어떤 북부지방에 건물이 한건물이라고도 볼수 있고 한사업자가 미납체납액이 2억 얼마씩 되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니까 2억 얼마짜리가 2사람이 되고 8천얼마인가 이렇게 몇사람이 한 5억, 6억을 차지하던데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군청앞에 아스콘으로 덮는 것이 재무과 소관이 맞는데 금년도 예산심의 할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청사내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그 화장실을 개보수 할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고 예산심의 의결을 했고 그때에도 군청앞의 광장이 시멘트가 다 깨어져서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을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광장은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 알았다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포장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TV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11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0억2,1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9억5,400만원, 그중에서 도세가 5억1,900만원, 군세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6,6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암에 있는 현대 하일렌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3억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은하스라고 횡계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취득세의 13개종목에 3억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가 6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확보를 해서 성업공사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대하일렌드는 7차 공매를 마쳤고 11월30일날, 그리고 은하스는 6차 까지 공매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안되어서 체납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공매가 한번 더 있을런지 마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공매를 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앞마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직원 주차장이 없어서 직원차량은 앞 도로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늘어나고 민원인만 안에 들여놓고 하다보니 민원인도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정원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장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직원차까지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할때 아마 청사수리비로 하는것으로 했는데 화장실 일부는 수리를 했고 나머지 하고 민원주차장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약 사업비가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좁혀서 민원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민원주차장 늘린것 그것은 예산이 확보

가 된것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광장은 뭇씨우기 한다는 것은 승인을 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예산이 둔갑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가십니까?

블림없습니다.

잔디밭을 늘리는것은 확장하는 것대로 예산이 서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 청사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것이 아세콘으로 덮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는 것 입니다.

○ 900만원은 포팔 사업비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뒤에는 포장이 안되는 것을 시공회사에 다 돈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서비스를 해 달라고 해서 서서비스를 받아서 포장을 마주 마쳤습니다.

○ 당초예산을 포장을 하겠다는 6,000만원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는데 군수포팔사업비가 군청마당이나 포장하라고 하는것이 포팔사업 목적은 아닌데 쓴것까지는 좋습니다.

849만9,000원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5,000만원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었

습니까?

이 5,000만원어치를 어디에서 해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심의때 그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군청사 정비 정원하고 건물해서 9,7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울타리 밖의 주차장은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정원에 따른 민원주차장은 이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건물정돈할때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집행이 조금 예산부기, 예산승인한데로 집행을 안해서 문제가 된것 같은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진것 같은데 그 내용은 세수증대수입관리 정보비인데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전부터 각실과소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감사자료가 전혀 미진하다 다른과는 각종증빙서가 첨부가 되고 했는데

데 재무과는 증빙서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현황만 기록을 해서 현황만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은 기본경상  
비 중에서 수용비와 수수료 ,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지출에 대  
한 지출부 사본이 전혀 첨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에는 각종증빙서류중에 복잡하고 양이  
많은것은 생략을 하고 지출부같은 것은  
간단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전혀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는것 같습  
니다.

왜 증빙서등 서류가 제대로 첨부가 안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redacted] 저희 재무과에  
서 첨부를 안한것은 집행현황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잘못알고 첨부를 안했는  
데 지출부는 거기에 대한 복사를 해드  
리겠습니다.

○ [redacted] 지출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입증대

수입관리면에서 정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같이 서면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redacted] 광문춘 위원입니다.  
주요 지방세체납 현황을 보면, 도암면  
현대하일랜드, 오너스 두회사는 체납이  
7억원이 되는데, 부과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redacted] 부과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취득세부터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과년분에 금년도분 재산세,종토세를 포  
함된것입니다.

○ [redacted] 지금까지 연체가 되  
어 우리가 받을 금액이 아닙니까?

○ [redacted] 저희가 공매를  
신청하여 현대 하일랜드는 7차, 오너스  
는 6차 공매까지 했습니다.

○ [redacted] 공매를 6차,7차를 하  
여도 내지않는데,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 [redacted] 방법은 그방법밖  
에 없습니다.

건물주가 부도가 나 부도처리 되었고,



그사람들이 행복되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지에 찾아가도 전동주씨나, 오너스사장은 만날수 없고, 그 사무실에 가보아도 사람을 만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되면 받는다 밖에 없습니다.

○ **金鍾永委員** 김종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에도 상당히 애기가 많았습니다.

전과 같은 숫자가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李永德** 시장사용료는 저희가 시장을 지어서 세를 받는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5일장에 오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조례상으로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조금씩 징수가 됩니다.

진부같은 경우 김익노씨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朱泰元委員** 주태원위원입니다.

재무과 일반현황을 보면,업무량이 과중하여 정원도 많고, 현원이 정원에 한사람 부족한 34명이 되는데, 일용직을 11명을 고용한다는데, 일용직의 보수하고 정규직 보수하고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 **財務課長李永德** 일용직은 일당 14,300원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날자만 나가고, 휴일도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외에 각종 상여금도 지금이 안됩니다.

○ **李永德** 예산면에서는 절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용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날품팔이인데, 이사람들을 300일 고용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력 능력으로 봐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11명을 쓴다는것은 차라리 정규직원 전원을 늘려서라도 능력있고 모든과정을 거쳐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일용직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리한다고 하여 본군에서 대폭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것은 의심도가고, 재무과가 직장없는 사람들의 취업알선소

같은 기분을 내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매각 범위 확대하여 종전보다 개선된 사항이 건물면적의 2배까지 매각 한도이며, 나머지 면적이 건축면적 최소 한도이내 까지 매각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면적 최소한도 이내는 매각가능하다고 하는데,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다라고 하면, 2배를 넘어서라도 매각 할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일용직이 많은것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것도 있습니다만은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 아주머니 4분도 재무과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적계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

거기에 따른 특조법 보조요원 3명이 있고, 그외에 부동산 과표 조정엔 업무 보조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종토세, 재산세를 내다

내다보니 현인원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도,내무부에서 일부 일용직에 보조를 해주고, 군비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매각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에 2배에 한하여 할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현재 도심 밀집 지역에 건물 2배면적 보다 조금, 건물이 만약 2㎡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 일때 2배이면 20㎡인데 2㎡이 그렇게 되면 20㎡을 팔게 되면 2㎡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2㎡까지 팔수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redacted] 그러면 밀집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 [redacted] 원칙적으로 밀집지역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밀집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가 되지 않고 농촌의 집단부락으로 되 있는 지역은 법이 개정어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을 명년도 부터 할 계획입니다.

○ [redacted] 제가 두가지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계지역에 계속 애기가 되 왔습니다만  
균유지 임대 체납에 대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서 주민들이 체납  
이 되어 가는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나오  
셔서 협의도 해 보았고,

협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금년도에  
지가를 잘 조정을 해서 꼭 하겠다 말씀  
을 하였고, 주민들은 차이가 생기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부가가 되어  
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나 어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말한마디 안하고 준수도 아무런  
대책없이 있는것 같습니다.

매년 누적이 되는데 그러면 그사람들의  
세금 부가액이 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납세할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가라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뒤해보면 박병기 소송문제는 앞  
으로 승소할 전망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redacted] 재무과장님 잠깐  
답변을 증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현재

17시가 지나므로 오늘 예정된 회의시간  
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사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코자 하  
는데 동의하여 주실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 "네 동의합니다"

사회과장 : "네 동의합니다" )

○ [redacted]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횡계 국공유지 임대료 문제는 문제가 된  
것이 공시지가가 갑작스럽게 올라서 지  
금 상당한 미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3년간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부기바탕이 불다보니까,

그리고 전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임대  
를 산정을 안하고 과표를 가지고 산정을  
하거나 별도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  
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  
정하도록 그렇게 되있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전과 상당한 금액 차이  
가 나서 이분들이 불응하고 있어서 이분  
들이 집단으로 민원까지도 제출을 했었  
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제출하고,  
도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부과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방법  
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가률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20- 30%의 지가률 하락을 시켰  
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보상을 주고 할때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나오  
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매각을 할때에는  
기관에서 나오는 가격이 싸다고 하고  
저희가 받을때는 또 비싸다고 하는 이원  
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많이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30% 지가 조정을 했  
기 때문에 내년도 , 금년도까지 부과된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가 낮아졌으니까 적게 나갈것이고  
앞으로도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12월중에  
부울면장과 재무계장을 모아서 일소대책  
을 세우고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  
습니다.

그리고 박병기씨 소송건은 핑계리 토지  
로서 그동안 임야로 있던것을 개간을  
해서 전으로 전환하면서 지번과 면적이  
상이해서 발생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인데 저희 원고는 대한  
민국이고 피고가 박병기와 10인입니다.  
지금 9차 변론까지 마쳤는데 지금상황  
으로는 국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  
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  
겠습니다.

시장사용료 1년 사용료가 159만9,000원  
이죠,

지금 계산을 해보면 5군데에서 장이서는  
데 일년에 약 72회정도 장이 섭니다.

그러면 한번 약 2만원정도 밖에 들어가  
지 않고 한장에서 4 - 5,000원밖에 시장  
사용료가 징수가 안된다는 얘기가 됩니  
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얘기가 나온얘기  
이고 그래서 그때도 촉구한적이 있습니  
다만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다면 안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증대가 되야 하겠고 자금수요가 늘어난다고 봤을때 좋은 세수가 있는데도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성의가 너무 없는것이 아니냐, 아까 조례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조례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 조례만 가지고 말할것이 아니라 조례를 현실화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있으면 지금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조례는 지역경제와 소관에 평창군시장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이 시장사용료 많이 받을수 없는것이 일정한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거의다가 개인토지가 많습니다.

진부같은 경우는 김익로가 문제토지이고 평창같은 경우는 정석진씨의 개인토지에서 시장을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할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희땅 같으면 물론 많이 받아서 군세입에도 증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도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나와서 시장사용료를 올리자는 안도 있었습시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시장사용료가 그렇게 적은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읍면에서 바쁜때에 나가서 시장사용료를 받자면 사실 거지 동냥하듯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redacted] 안내는 사람은 영업을 못하도록 하면 될것 아닙니까?

개인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해 놓고 그외에 개인토지가 아닌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장에서 4-5,000원이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지역 눈치볼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원이 있는데도 자원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보고 다시한번 계획을 협의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redacted] 시장사용료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지가에 대해서 저가가 등급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매년 조사하는 것입니까?

○ [redacted] 과표를 매년 현실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로도 내놓았습니다만 과표는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작성을 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평균군이 22.7%입니다.

내년에 현실화를 27%로 인상하기 위해서 과표로 따지면 약 20%, 내년에 종토세나 이런것이 재산세가 약 20% 증대되는데 과표를 매년 증가하고 96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계획이 과표와 공시지가를 똑같이 만들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할려고 매년 과표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평에 옥수수공이라고 해서 갈아서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공장부지가 공유지입니까?

임대를 받습니까?

○ [redacted] 공유지입니다.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년 17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 [redacted] 임대를 한번도 안내고 거의 10여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다 세금도 10원 안냈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한번 알아 본것입니다.

세금부과는 안시킵니까?

○ [redacted]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세금은 얼마 나가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박위원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관사가 있는곳이 있습니까?

○ [redacted] 읍면에 용평하고 방림에 옛날 보건지소를 수리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 [redacted] 없는 면에는 관사를 1동씩 지어줄수 없으십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면장님들이 가고오고 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방을 못구해서 몇달씩 짚짚매고 출퇴근을 하는것을 보아 왔습니다.

관사가 있으면 이런 폐단은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적은 없으십니까?

○ [redacted] 관사는 저희가 생각은 했습니다만 원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에 무자를 하면 주민들의 인식도 좋지않고 관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운적은 없습니다.

○ [redacted] 이상입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redacted]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사회과장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계장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허해성입니다.

(사회계장 인사)

다음은 위생계장 김형욱입니다.

(위생계장 인사)

다음은 의료보장 계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연가를 갔습니다.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직원은 총 10명으로서 사회계 5명 의료보장계 2명, 위생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4,74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5억 4,673천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507만4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적립금, 369만6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 [redacted] 사회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치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과 소관 2건을 자료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接客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협회에서 위생검사를 하기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있는 말씀을 드렸더니, 93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위생검사업소에 나갈때 같이 나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단속을 하여 철저한 위생검사를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2년 위생검사결과 행정처분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생검사를 경찰서에서 하고 또 군청에서 직접 위생검사를할때는 업소가 상당히 깨끗하고, 위생검사를 온다고 하면 벽지를 사다가 도배도하고 청소등 여러가지를하여 종업원이 위생복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래에는 비질도 한번 안하고 위생검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질의 했더니, 위생협회에서 저에게 불만스런 얘기를하여 들었습니다만,

사회과에서는 위생검사에 대한 지도와 위생협회에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는것인지, 위생협회에서 위생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것인지 당최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93년도는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94년도에는 과장님이 위생검사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구상이 있으신지 본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위생검사를 하고 간후에 단 1시간 있다가 식당에 가보면 했는지 마는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94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취로사업입니다.

각읍면별로 자금이 나갔는데, 연도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면별로 1,100만원, 1,200만원이 두번에 걸쳐 나갔습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본군에서 하여 읍면에서 취로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취로사업을 적절한 곳에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일전에는 국도에 서리가 내려 풀이 다 죽은것을 여자,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성격은 좋지만, 돈을 그냥 내버리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마을 안길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서리가 내려 죽어 쓰러진 풀을 앗아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뜻도 좋지만은 효과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행정사무감사에 취로사업에 대한 증빙서, 기타 서류등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사람을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켰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성호** 이치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사 실시와 시정실시에 대한, 공문서 사본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한 자율검사에 대한 형식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완전하게 검사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율지도감독외에 특별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등을 몇 일전에 실시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여 숙박업 위생질서를 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감시관계는 90년도 3월29일 보사부 훈령으로 나와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다시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성호**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냥 놔두는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협회에 그냥 놔두는것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김성호** 자율적으로 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김성호** 지적된 사항을 본군 사회과에 보고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社會課長 張世德** 에 처분을 합니다.

○ **李政基**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위생검사를 하는데, 본군 사회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李政基** 특별한 계획은 일단 자율지도점검을 일체 없앨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수 있도록 하고, 금년까지 잘안된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 내년도에는 군자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政基** 좋습니다.

작년 사회과장님이 어느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군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의회에서 질의할때는 그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 **李政基**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政基** 1/4분기에 하겠다, 4/4분기에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과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세요?

○ **社會課長 張世德**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 **李政基** 상반기중에 꼭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 **社會課長 張世德** 각종 취로사업에 대한 현황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또는 자연보호활동으로 인하여 효과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의 근본 취지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일시 취로 목적보다는 생활안정의 실업자 대책, 사회안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치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길을 닦는것,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부대비도 듭니다.

일체 부대비가 없고 노임으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사 사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시한것은 국도변 정비 또는 자연보호활동, 대청소 운동등을 증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redacted]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면에 예산만 배정해놓고, 면에 위임을 하니, 취로사업자체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속된말로 되구말구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는것이 더 낫을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은 다 갔지만, 94년도 취로사업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취로사업을 시킬때 효율적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일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치욱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심야퇴폐, 변태 업소 지도단속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속을 한다하여 업소별로 종업원들도 수명이 가고는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단속을 하지 않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아 다방의 틈켓장사등의 문제들이 다시 성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서 이런일들이 다시생기냐하면, 행정관리지도를 할려면 강력히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단속을 하지않아 행정력실효성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위생검열에 대하여 보건문제가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까.  
 텃켓장사를 하게되면 신체 건강등 여러 문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업소들이 다방영업이 아니라 틈켓장사가 전부입니다.  
 계속 단속을 했는지? 또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redacted]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방및 심야퇴폐지도단속은 계속 실시를 합니다.  
 불시에 하기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틈켓문제가 다시 성행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를 하는대로 강력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redacted]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업소는 업종표시 위반, 주방바닥 타일 파손, 등의 벌금을 징수하고, 다방같은 경우는 단속자료가 없습니다.

○ [redacted] 다방에 대해서는 심야관계는 12시 넘어 하기때문에 다방 관계는 대부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여 증거포착을 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redacted] 앞으로 불미스런 일이 적발안되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고, 지도를 해서 안되는것은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redacted] 다방업소는 금년에 경찰합동으로 5개업소가 영업정지 처분된것이 실적입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박용태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맥락으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당구장은 당구만 치는것이 아니라 밤 12시만 지나면 문을 닫고는 카드놀이를 합니다.

시내젊은사람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농

촌 사람들이 합니다.

농산물을 팔아 하루저녁놀다가 다 잃고는 아침에 집으로 가는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이런것은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흥업소는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12시 넘은다음 술먹고 고성방가 하는것도 단속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누구하나 말한마디 하는 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dacted] 당구장에 12시 이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농촌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적발되는대로 엄중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당구장은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redacted] 김낙운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직업훈련을 100여명 이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직업훈련을 이수한후에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취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끝난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요?

○ [redacted]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redacted]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평창군에 행려자 사망자수는 몇명으로 나와있습니까?

○ [redacted]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dacted] 행려자 사망자 장례비를 금년에 100만원 세웠는데, 25명이라면 구당 5만원도 안되는데 5만원가지고 장례식을 치를수 있습니까?

○ [redacted]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redacted] 이것은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에 나가는돈이죠,

○ [redacted]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redacted] 올해 사망자수가 나와 있습니까?

○ [redacted] 행려병자는 1구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5명 나왔습니다."

○ [redacted] 평창군에 발생한 행려자 사망수가 15명이란 말이죠?

작년도 예산을 대충 알기로는 100만원밖에 안했는데, 장례비를 구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 [redacted] 1구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행려사망자에 대한 항목에 같이 되어 있는 세세항목에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10만원씩 지급합니다.

○ [redacted] 예를 들어 읍면에서 발생하였을때,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0만원인데, 10만원가지고 장례식을 지낼수 있는지 말입니다.

○ [redacted] 조금 모자랍니다. 동네에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그돈으로 장례식을 지내주는 실정입니다.

○ [redacted] 예,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하는것은 최하 40만원이 있어야 한사람의 장례식을 지냅니다.

군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런돈은 더 계상하여 장례식을 지낼수

있어야지 행려자 사망이 많을 경우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 이장, 반장이 다  
니면서 사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예산은 어렵지만 앞으로 확보를 하  
여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에게 사정을 하  
지 말고, 40만원이면 사람을 사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내년도부터는 편  
제가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충분  
히 예산이 반영되어 행려자들이 사망하  
면 30~40만원을 지급하여 장례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redacted]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잘 알았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  
니까?

○ [redacted] 주태원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자들을 보니  
요즘 그사람들한테 증빙서 징구하는것  
이 있어요? 있습니까?

○ [redacted] 있습니다.

○ [redacted] 그사람들을 보면  
고령자, 신체장애인들인데, 멀리가서  
보호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등 확인하  
는 증빙서 증거는 읍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그것으로 생략을 해도 가능 한것 같은데  
사실상 틀림없는 보호를 해야 할 사람을  
해마다 증빙서를 해오라니, 노인들이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겠습니까?  
법으로 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간략  
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지, 문민정부  
되었다고 좋아진다는 세상이, 딱한 사  
람들한테 해오라니, 그사람들이 뭘 압  
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지도록 하고, 가급적이  
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에 보면, 요식업을 하는 사  
람들이 위생검사를 받을때에 경미한  
위법에 과징금을 21만원을 내는 사람의  
자료내용을 보면 주방타일이 깨어졌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는 것  
은 너무한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 물론 있어서 징수를  
했겠습니까만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서민들이 하는 것입니  
다.

고급식당을 하는 사람들이야 주변정리도  
잘합니다.

서민층에서 대중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주방에 타일이 떨어졌다고 행정지도로 끝나도 충분할텐데, 과징금을 21만원씩 징수한다는것은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뒤에 내용을 듣고 보니,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번째가서 안하니까 과징금징수를 한것 같은데, 이런것은 정상참작을 하여 행정지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득이 안되었을때 몰라도, 타일정도 붙이는 경우 주방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전체를 다붙여도 될텐데, 엄청난 징수를 한다는것은 바탐직하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증한 실수를 범하여 영업정지를 15일, 10일을 받은 업소가 있는것 같은데 이사람들은 더 엄하게 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업 정지를 당하는 사람들은 본래 목적 외에 변태영업을 했거나, 증대한 과오를 범했는데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문밖에 내부수리증이라고 표말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업소를 잘이용하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알기는 내부수리하느라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엄증하게 분명히 영업정지를

다하면 간판에다 "변태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몇일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집이라면 누우침이 다를것입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는중에 내부수리증은 그사람이 반성을 크게 안할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redacted] 주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보면 실질적으로 혼자사는것 같아도, 의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어서 그런것을 확인하느라고 징구했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징구를 안하고, 담당 직원이 호적부에 있는것을 그대로하고, 만일 다른데 있다면, 가지고 옵니다.

○ [redacted]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여러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알아볼때가 없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보면 당시 호적에는 아들 누구누구, 며느리 누구누구, 당신을 보호할사람이 있는데, 호적을 띄어서 확인해 오시요 그러면 노인이 어디에 가서 해 옵니까? 자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도 없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는 잘못 기재된 사람도 있습니다.

실지 있어도 자식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해옵니까?

사실상 이.반장,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히는 사항인데 해오라고 합니까?

○ [redacted] 만일 호적상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심의과정에서 확정을 지을수 있는 근거에 필요한 결의서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본적지에서는 본인보고는 피어오라고는 안해도 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에 대하여 경미한것에 대한 너무큰 과징금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끝부분까지 읽어보셔서 정상참작에 대한 행정지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업소는 대개 여러번 지시를 해도 시정을 하지 않아 필요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오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내부수리중에 있는것으로

위장을 해서 여러사람들이 알수 없는 사항에서 지나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문제에 대하여는 정지 명령서를 몇월 몇일까지 한다는 명령서를 출입문에 부착을 합니다.

만일 그것을 띠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보충질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동빈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부녀복지계장 홍금숙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91년 4월1일 사회과에서 분리 신설되었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7명이며, 현원 7명입니다.

별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1명 행정8급 1명, 별정 8급 2명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정복지의 총투자된 자원은 6억9,400만원인데 여기에 노인복지로 3억1,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아동복지로 1억8,100만원, 부녀복지에 1,600만원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을 위해 1차로 1억5,6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김종영 위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 1인당 급식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 [redacted] 유아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교육청소관으로 넘어 갔습니다.

○ [redacted] 알겠습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영유아 보호시설및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육사업비로서 예산내용을 보니까 국비, 지방비 해서 100% 보조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군비는 투자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평창읍에 어린이집 학생수가 70명, 소화어린이집 70명, 이 학생들이 부모가 월소득 70만원 미만인 자녀가 유아원에 다닐때에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 [redacted] 70만원 미만의 자녀는 50%만 지원이 됩니다.

○ [redacted] 그러면 현재 보육원에 다니는 재학생의 부모에 대한 소득 평가, 명단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면답변 - 끝에 실음 )

○ [redacted]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70만원 미만인 자녀들도 보육원에 다니는것으로 알고 있고 월소득이 70만원 이상인 자녀도 보육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유독 평창읍에만 보유원시설에 국가가 투자를 해주는지,

읍면에도 국가의 보호시설이나 김종영 위원이 말씀하신 급식비나 이런 혜택을 고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창읍에만 투자를 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평창군의 각읍면에 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상부에 건의 하셔서 많은 예산을 따다가 복지행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지금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왜 평창에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각읍면에 있는 유아원을 어린이 집으로 인가를 해줄테니까 법인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법인으로 인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평창만 두군데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평창어린이집은 대한기독교 감리회 유지재단법인이고 소화어린이집은 천주교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법인으로 법인체가 되어 있기에

문에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있는 유아원도 법인체로 빨리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라 해도 본인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93년12월31일까지 3년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4년도에는 어떻게 되리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12월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법인체 관계때문에 평창에 두군데 있습니다.

○ [redacted] 군비가 부자가 됩니까?

○ [redacted] 네, 기 제출한 보육사업예산액에 보면 %가 다 다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가 국고에서 54%, 지방비가 36%, 자부담 10%, 그다음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국고가 48%, 지방비가 32%, 자부담 20% 또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고는 48%, 지방비 32%,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 다 다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소독 70만원 이상되는 아이들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이들은 하나도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월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 [redacted] 잘알겠습니다.

○ [redacted] 광문춘 위원입니다.

평창군 8개읍면 노인회가 여러군데 있는데 분기별로 150만원씩 평창읍에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것은 군지회만 지급을 합니다.

○ [redacted] 똑같은 노인회인데 군지회라고 해서 지원을 합니까?

○ [redacted] 사무비와 각읍면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무국장이 한분이 계십니다.

○ [redacted] 잘알겠습니다.

○ [redacted]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평

창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2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1일 평창군에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6시24분 감사중지)

○ 出席委員

委員長 李 相 薰

幹 事 朴 容 泰

委 員 李 致 玉

委 員 金 樂 雲

委 員 朱 泰 元

委 員 郭 文 春

委 員 金 鍾 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韓 榮 一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韓 奇 洙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保健專業課長 李 基 魯

企 劃 室 長 高 昶 植

文化公報室長 李 喆 均

內務課長	金榮柱
社會振興課長	權純喆
財務課長	李永德
社會課長	張世德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產業課長	金時漢
地域經濟課長	朴榮源
畜產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吳興一
都市·建設課長	洪基杓
民防衛課長	朴俊河
保健事業課長	任永彬
社會指導課長	全根鐸
技術補給課長	李宇炯

○ 議會事務課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咸京鎭


[ 議 席 ]

○ 議席表 ( 328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59條의 規定에  
외거 署名 捺印함.

1993年 12 月 2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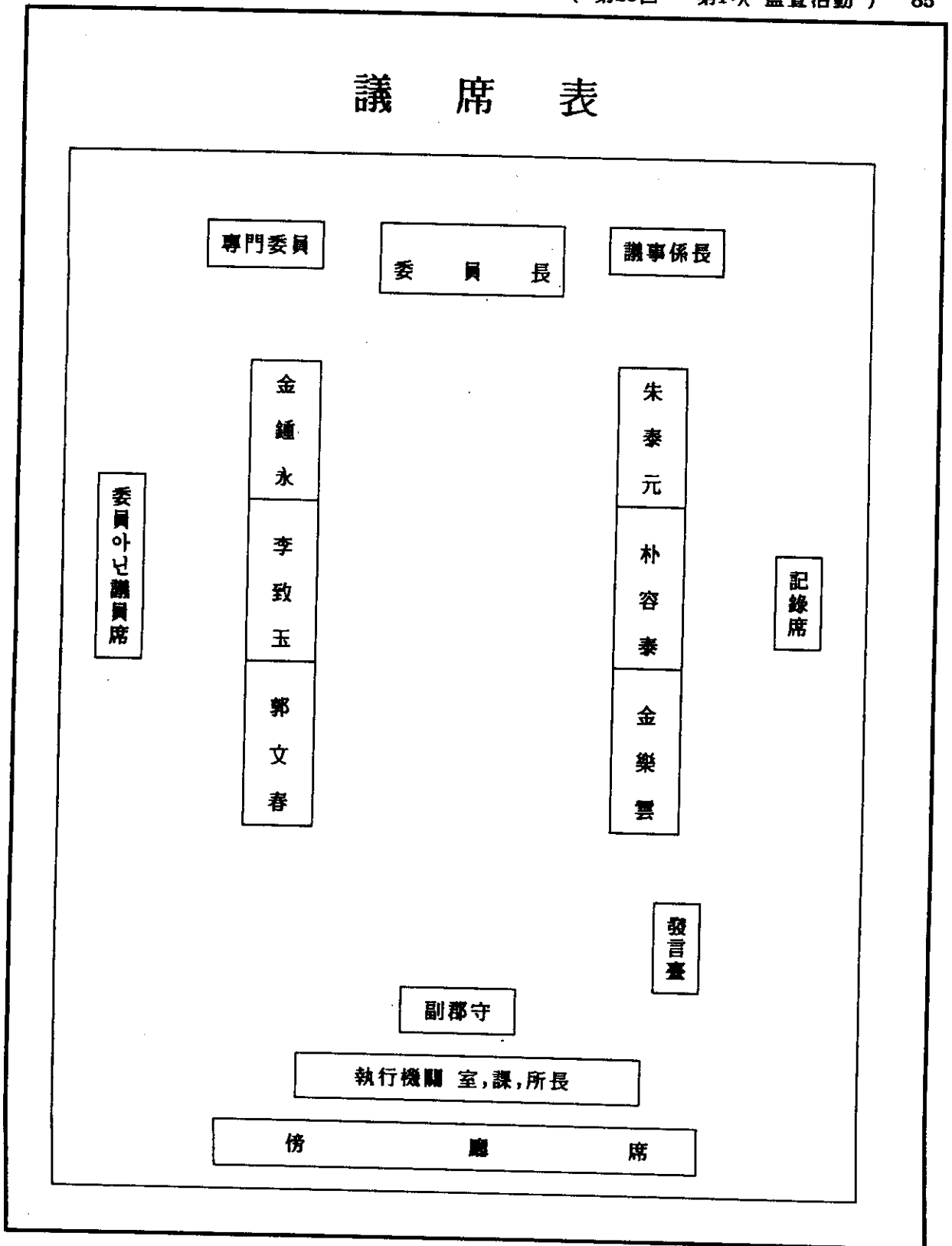
委員長

李 炯 

專門委員

辛 教 

# 議 席 表



# 질의. 서면 답변서

질의	주 태 원 의원	답변자	평창군수 (문화공보실장)
회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93. 12 . 1 )		
<p>&lt;질의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방송비와 시청료의 징수여부</li> </ul> </li> </ul>			

## <답 변>

### □ 유선방송사별 징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구역	가입자수	월유선방송료
계		6	67개 마을	4,450	
평창유선방송사	권영봉	평창읍일원	15개 마을	1,100	2,000원
방림유선방송사	함용수	방림면일원	13개 마을	150	2,000원
대화유선방송사	변응혁	대화면일원	16개 마을	1,000	2,000원
봉평유선방송사	정영권	봉평면일원	6개 마을	450	2,000원
진부유선방송사	정각철	진부면일원	9개 마을	1,000	2,000원
평 화 소 리 사	한재수	도암면일원	8개 마을	750	3,000원 (중계2,000, 음악1,000)

### □ T V 시청료 징수현황

- 징수권자 : KBS 영월방송국
- 시 청 료 : 월 1,500원 (난시청지역 시청료 , 일반지역 : 2,500원)
- 징수대상가구 및 징수실태
  - : 방송국 자료중 대외유출금지 사항으로 파악 불가

# 질 의.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이 치 옥 의원	답변자	평장군수 (문화공보실장)
회 의	제20회 평장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93. 12. 1)		
<p>&lt;질의요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으로 나가는 신문부수에 관하여</li> <li>-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li> </ul>			

<답 변 >

- '93 예산액 \_\_\_\_\_ 52,332 천원
- 신문별 우편발송 내역

신 문 명	부 수	보 급 대 상
합 계	983	
서울신문	300	. 새마을지도자 191 . 도·군의원 10 . 읍면부녀회장 9 .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장 8 . 오 지 반 장 69 . 자율방법대 13
강원일보	400	. 이 장 183 . 도·군의원 10 . 군정홍보위원 8 . 경로당 19 . 오 지 반 장 164 . 농민후계자협의회장 8 . 의용소방대장 8
도민일보	283	. 오 지 반 장 283

# 질의·서면 답변서

질 의	김 종 영 위원	답변자	평참군수 ( 내 무 과 장 )	
회 의	제 20 회 평참군의회 (정기회) 감사특위 ( '95. 12. 1 )			
<p>&lt; 질의요지 &gt;</p> <p style="margin-left: 40px;">○ 민원처리중 진정,건의등의 내용</p>				
<p>&lt;답 변 &gt;</p> <p>1.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p>				
구 분	접 수	처 리	미 처리	비 고
계	79	79	-	
진 정	27	27	-	
건 의	29	29	-	
질 의	5	5	-	
청 원	10	10	-	
이 의	1	1	-	
고 발	1	1	-	
기타 (한원)	6	6	-	
<p>2. 진정,건의등의 내용</p> <p style="margin-left: 40px;">&lt; 별 첨 &gt;</p>				



# 주요민원처리상황

접수번호	구분	민원요지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 및 지목변경 요구	· 도시계획편입용지 분할. · 지목변경 도로로 변경불가	
2	건의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 재산권 행사에 손실 초래	하진부 173-6번지 193㎡는 건축 대지로 사용가능	
3	건의	대화6리 교량가설 위치 재선정 요망	주민숙원사업으로 의견수렴 사업 추진 계획	
4	진정	국도포장 사업에 따른 농민피해 대책 강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첩	
5	청원	토지교환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봉평중고등학교)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 불가능 할시 소를 제기	
6	진정	농작물 운영 자금에 따른 진정 (일포에 재배)	사업계획 수립후 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지원	
7	건의	화재발생에 따른 건축허가요망	임시용 가설 건축물 허용	
8	진정	기존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 조치 요구	진부단위농협 신축건물로 공사중 제시공이 되도록 지시	
9	건의	오지 면 낙후마을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재검토 건의	기획정되어 추진중인 사업 향후 검토와 의견수렴 반영	
10	진정	방림규석 채광 피해에 따른진정	심야은행금지, 광해방지용 옹벽설치 등 행정지시 및 지도	
11	질의	보상금 청구통보 및 지불중지 통보에 관한 질의	감정 및 단가사정 등 행정절차 후 청구통보	
12	진정	유형업 영업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강구	식품위생법에 의거 시설개수 토록 행정 조치	
13	건의	지방세 수납 및 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건의	· 지방재정법상 불가 · 도로공사 사항으로 협의	
14	진정	오대천 호명재방 개수공사 편입 손실보상금 책정 부적정 진정	국가공인 기관인 2개감정평가 의뢰 공정하게 감정	
15	청원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한 청원	채용권한은 읍면장.고용직 근무상한연령 58세로 법적불가	
16	건의	농가주택 건축에 대한 용자금 지원 요망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읍면장의 권한 협의 해결토록 노력	
17	진정	국립공원내 논사태로 넘어진 나무 제거에 따른 정비 건의	월정사측과 협의 쓰러진 노송 제거	

접수번호	구분	민원요지	처리내용	비고
18	질의	묘소이장에 따른 토지지목에 대한 문제점 질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등록전환 안내	
19	질의	소집면제에 관한 질의	생계곤란사유 소집면제 해당 (병무청 질의사항)	
20	한원	특신으로 뇌경색증세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처우대책	생활보호 추가책정보록 평창 읍과 협의	
21	청원	약초재배 농가에 대한 보호및 대책	수입규제등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	
22	청원	군유지 소유권 이전 요구	매매계약서만 확인되고 매각 납부사항 미확인 이전불가	
23	진정	초지조성에 따른 진정	4.1일 본인 취하	
24	건의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요구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	
25	한원	도암면 지역 도시계획에 따른 탄원	향후 황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동의 여부 검토 반영	
26	건의	관광 휴양지 지정 요구	노동리 지역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27	청구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5.14일 본인 취하	
28	건의	방림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건의	현지여건등 타당성 결여 광업권자와 협의 해결	
29	이의신청	군유지 매각 건의	협의처리 회신	
30	진정	농촌주택 건립 진정	82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400만원등재 확인 지영섭재산조회	
31	청원	군유지 매입 사용	군유지 사용 승락	
32	진정	근저당 설정에 따른 재산피해 대책 강구	이해설득	
33	건의	평창2차 아파트 하자보수 건의	6.3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 (주) 고려건설에 지시	
34	진정	매울공사 (용평 제산리 1286번지)	유수장애물 철거 및 정리 재산 영농조합법인 조치지시	

접수 번호	구 분	민 원 요 지	처 리 내 용	비 고
35	한 원	불법 농지 사용 시정 건의	불법농지로 사용 불가	
36	진 정	방아다리 약수지구 하자보수	6. 30일까지 보수 완료 계획	
37	한 원	농작물 피해에대한 진상규명 요구	항상주택 건설과 협의 해결	
38	진 정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한 진정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 현재는 어려운 실정	
39	질 의	평창군 읍면장 임용통에 관한 질의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기한이며 연장여부는 인사위원회-군수	
40	고 발	불법 농지 훼손 고발	불법농지 훼손 원상복합정 지시	
41	진 정	이혼소송에 따른 진정	이해설득 회신	
42	건 의	진부면장 연임건에 대한 건의	침체된 인사적체의 해소 및 새로운 행정행태의 변화	
43	건 의	주차선 표시 요구	주차선 표시 불가 회신	
44	진 정	도시계획 재정비 및 토지보상 선행	재정행편에 맞추어 년차적으 므로 검토 시행	
45	건 의	장평 진입로 도로변 주차장 사용 승인 요구	강릉국도유지 이첩 · 고속도로구간, 4차선구간불가	
46	진 정	토지보상 요구(편입토지 굴재 양여)	개인의 굴재채취허가는 제한	
47	진 정	기존도로 원상회복 불이행 재촉구	훼손도로 복구완료.	
48	건 의	주택용자금 및 하수도 시설 설치 요구	· 무담보 대출 불가 · '94년 예산반영 검토	
49	건 의	농로개설 및 세월교 증설 건의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검토 반영 계획	
50	진 정	대중음식점 위생단속 실시요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51	진 정	임도에 의한 산사태에 따른 보상 요구	양곡지원, 농경지복구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불가	

접수 번호	구 분	민 원 요 지	처 리 내 용	비 고
52	진 정	임야 외 벌채허가 요구	5,000㎡미만은 신고 5,000㎡이상은 허가로서 가능	
53	탄 원	산림청 소유임야 환원조치	강릉영림서 평창관리소 이첩	
54	청 원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보상수령토록 안내(본인미수령)	
55	건 의	레카차량 불법 상주영업 시정 요구	9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56	건 의	군유지 임대 시정(폐건축자재 로 불편 초래)	현지조사 후 단속 실시	
57	진 정	불량채소 종자 파종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농촌진흥청 원인규명 의뢰 기상환경 원인	
58	건 의	국유토지 확인건의	산림청소관 강릉영림서 이첩	
59	건 의	레카차량 불법상주 영업 시정	9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60	탄 원	산림청 소유임야 환원조치요구	강릉영림서 평창관리소 이첩	
61	건 의	진부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94년 사업으로 추진건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2	진 정	평창관문정비시 이주한 이사비 및 주거비 보상청구	보상금 지급	
63	진 정	도로개설시 임의분할 및지목변 경 요구	건설부로 소유권이전 사실없음 매매계약 체결 보상비 지급.	
64	건 의	폐국도 포장건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첩	
65	건 의	임하교량 부족 사업비 책정요망	'94년도 예산반영 추진계획	
66	건 의	진부 대관령빌리지 앞 불편사항 처리 건의	주정차단속실시.보도브럭,가 드레일 설치 검토	
67	건 의	농지전용허가	불법전용농지로 판명 원상복 구 지시	
68	질 의	산림피해(무단벌채)에 따른 행정지시 질의	자연훼손사범 입건조치	

접수 번호	구 분	민 원 요 지	처 리 내 용	비 고
69	청 원	토지보상 재결 신청	2개공인감정평가 기관 감정 정당가격으로 재결 불가	
70	건 의	이설도로 및 가옥이주에 대한 재결신청	평정농지개발조합 이첩	
71	건 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오류사 함 정정 요구	"전주이씨임영대군파" 로 정정	
72	진 정	임도유실로 인한 농경지 훼손 보상요구	양곡 및 농경지 복구 농작물피해보상규정 없음	
73	건 의	송정택지개발 분양금 납부어려 움으로 인한 해약 요청	계약금은 반환불가 해약가능	
74	청 원	지적복구 소유권 이전 청구	하천관리부서의 협의없이논 정리 불가	
75	건 의	축사 농지전용허가 요구	면장의 권한사항으로 재검토 하도록 지시	
76	진 정	황성주택 건축으로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피해 대책	이해관계인 및 번영회 동의견 수렴 법적저촉사항 없기허가	
77	건 의	방림면 삼수원시설 변경검토 건의	'94예산확정후 결정사항으로 취수원장소 결정한바 없음	
78	건 의	영농자금 앞선 요구	영농자금 앞선	
79	진 정	도로편입 용지 보상 건의	원주시방국토관리청 이첩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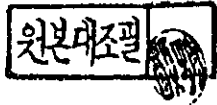
질 의	관 문 춘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 내무과장 )
회 의	제 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장 자 특 위 ('93. 12. 1. )		
<p>《 질 의 요 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게살기 보조금 읍·면별 지급내역</li> </ul>			
<p>《 답 변 》</p> <p>□ '93 평창군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 원 근 거 :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시행령 제9조</li> <li>○ '93년 지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 도 : 급양비, 수용비, 특판비등</li> <li>- 지급내역 : 총 15,840,000원(월평균 16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읍 : 1,980,000원</li> <li>· 미탄면 : 1,980,000원</li> <li>· 방림면 : 1,980,000원</li> <li>· 대화면 : 1,980,000원</li> <li>· 봉평면 : 1,980,000원</li> <li>· 용평면 : 1,980,000원</li> <li>· 진부면 : 1,980,000원</li> <li>· 도암면 : 1,980,000원</li> </ul> </li> </ul> </li> </ul>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이 상 훈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 (사회진흥과장)
회 의	제20회 평창군 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3. 12. 1)		
<p>&lt;질 의요지&gt;</p> <p>'93 범죄없는 마을 수상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증빙서</p>			

<답 변>

증빙서 별첨



232-800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

/ 32-2011-18

/ 전송

문서번호 새마을 13260 -

시행일자 1993. 7.

발음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장의  
16개 리장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부군수	4/11		
과 장		재무과장	
		경리계장	
기안	이 경	새마을계	협 조

제목 '93범리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지령 및 지급교부

'93범리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보조지령 및 지급 교부하니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완료후 사진 첨부  
정산보고하기 바랍

다 음

- 보조기관 :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장의 16개 리장
- 보조금액 : 삼천사백만원정 (₩34,000,000-)
- 보조금지급내역 : 불임조서 참조
- 지출과목 :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주요  
사업비 431

- 붙임 : 1. 보조금지급내역 1부.  
2. 보조지령서 1부. 끝.



새마을 13260 -

발음 : 내 부 결 재

제목 : '93범칙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지급결의

'93범칙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결의 합니다.

1. 사 업 명 : '93범칙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 외 16개리
3. 예 산 액 : 34,000,000원
4. 지 급 액 : 34,000,000원
5. 지급내역 : 불임조서 참조
6. 지 급 자 :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장의 16개 리장
7. 지출과목 :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 431.

불임 : 보조금 지급내역 1부    끝

평           창           군           수

# 보 조 지 령 서

- 보조사업자 : 평창군 평창읍 고길리장의 16개 리장
- 사업명 : '93범칙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
- 보조금액 : 삼천사백만원정 (₩34,000,000-)

위 보조금을 다음 조건을 부하여 보조한다.

1993. 7.



평 창 군 수

1.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11조(용도의 사용금지)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15조(감독)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1.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거 본 보조금을 보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에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 조 금 지 급 내 역

마을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 천 원 )			리 장 성 명
	사 업 명	사 업 량	계	군비	자부담	
합 계			53,000	34,000	19,000	
평창읍			15,000	8,000	7,000	
고길리	회관 보수	1식 (20평)	2,000	1,000	1,000	김성태
지동리	"	1식 (25평)	2,000	1,000	1,000	이창준
응암리	농로 보수	150m	3,500	2,000	1,500	이종규
입탄리	농로 포장	50m	3,500	2,000	1,500	이병일
용항리	농로 보수	100m	2,000	1,000	1,000	이창해
하일리	농로 보수	100m	2,000	1,000	1,000	지역만
방림면			3,000	2,000	1,000	
계촌2리	암 거	3 × 3.5	3,000	2,000	1,000	김기주
대화면			18,000	14,000	4,000	
개수1리	마을앰프	1대	2,000	1,000	1,000	김상복
대화4리	마을길 포장	30m	2,400	2,000	400	주재우
상안미4리	"	50m	4,000	3,000	1,000	정영옥
하안미2리	"	60m	4,800	4,000	800	권오집
신리4리	"	60m	4,800	4,000	800	박옥교
봉평면			15,000	9,000	6,000	
유포2리	농로 보수	400m	5,000	4,000	1,000	박준명
면은1리	농로 포장	50m	5,000	3,000	2,000	유석현
평촌2리	휴관 설치	1개소	2,000	1,000	1,000	김일수
홍정리	농로 보수	400m	3,000	1,000	2,000	최근우
진부면			2,000	1,000	1,000	
화의리	농로 포장	50m	2,000	1,000	1,000	윤노석

##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이 상 훈 위원	답 변	평창군수(재무과장)
회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행감1차 특위 ('93. 12. 1)		
<p>〈 질 의 요 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와 수수료,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대한 지출부 사본은.</li> </ul>			

〈 답 변 〉

○ 재무과 기본경상비중 수용비와 수수료,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에 지출부사본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22/

86

관                      학                      세합                      세세합                      목

년 월 일	지 요	채주	예산현액 ①	예 배 정 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 잔액 (2-3-4)	지급 번호	지출 일자	잔 액	
					자금전 도액 ③	식당액 ④				예산액 ①-②	배당액 ②-④
1	당초예산승인		17,937,000								
1 11	예산제 2호 배정			15,211,500							
2 2	93년 회계장부구입	고수성				995,000					
	원 계		11,989,000	11,000,000							
	주 계		11,989,000	11,000,000		99,000				11,989,000	11,000,000
6	재/회추경예산승인		4,000,000								
2 2	93년 회계장부구입	고수성						2209	62	999,000	
	원 계		4,000,000							999,000	
	주 계		4,000,000							999,000	4,000,000
9 2	지출내 산체활동 연회	이모준				10,000		266	912	10,000	
1 2	풀자청 구입	김광운				10,000		266	914	10,000	
1 10	지출내 전수입력자료 유선	고수성				111,000		271	920	111,000	
	원 계					121,000				121,000	
	주 계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 1	예산제 23호 배정			1,100,000							
2	회계장부 전수입력구입	고수성				1,100,000		266	211	1,100,000	
1 1	중립예산제 전수입력구입					291,000		266	222	291,000	
	지출내 산체활동 연회	김세현				91,000		266	227	91,000	
1 8	지출내 수입관리 서적 유선	고수성				100,000		260	227	100,000	
12	재/회추경예산승인		9,000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년월일	적요	계주	예산편액 ①	예배 ②	산액 ③	지출원인행위		예산 배정간액 (2-3-4)	지급 번호	지출 일자	지출액 ⑤	잔액	
						자급전 도액 ④	직급액 ④					예산액 ①-⑤	배정액 ②-③
9.22	청구권기안경리수수료	경리				10,000			100	2.2	10,100		
	월계					10,000					10,000		
	누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1	청구권기안경리수수료	경리				10,000			100	10.1	10,100	10,100	10,100
	월계					10,000					10,000		
	누계					20,000					20,000	20,000	20,000
11.2	사무차주권으로	사무차주				10,000			100	11.2	10,100		
11.6	청구권기안경리수수료	경리				10,000			100	11.6	10,100		
	월계					10,000					10,000		
	누계					30,000					30,000	30,000	30,000
12.1	예산제 11.1 호배정					10,000					10,000	10,000	10,000
12.11	사무차주권으로					10,000			100	12.11	10,100	10,100	10,100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년 월	과 목	세 상	계 회	계 부	지출원인행위		지출 일차	지출 액	잔		
					자 금 도 입	지 출 액			예 산 액	액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당초 예산승인	1440000									
	예산제 2-2 조배정		150000								
	구유재산 관리	경등권			150000						
		경유권			15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11 조배정		1500000								
	예산제 11-1 조배정		150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구유재산 관리	경유권			150000		200	150000			
		복합권			150000			150000			
		경등권			150000		200	150000			
		경유권			150000			150000			
		경유권			150000			15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11-1 조배정		150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2-1 조배정		1500000								
	구유재산 관리	경등권			150000		3000	150000			
		복합권			150000			150000			
		경유권			150000			150000			
		경유권			150000			15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2-2 조배정		1400000								
	구유재산 관리	경유권			1400000		3000	1400000			
		복합권			1400000			1400000			
		경유권			1400000			140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2-1 조배정		1400000								
	구유재산 관리	경유권			1400000		3000	1400000			
		복합권			1400000			1400000			
		경유권			1400000			140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예산제 2-2 조배정		1400000								
	구유재산 관리	경유권			1400000		3000	1400000			
		복합권			1400000			1400000			
		경유권			1400000			1400000			
	월 지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수 비	1000000	1000000		1100000			1100000	1000000	300000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연월일	과목	내역	예산액	잔액	지출원인행위		잔액	지출액	잔액	잔액	
					지출액	잔액				예산액	잔액
10.10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4,000		14,000						
	월계	계	14,000		14,000						
10.11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2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3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4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5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6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7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8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19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10.20	예산제	호백정									
	현금	현금수출	12,000		12,000						
	월계	계	12,000		12,000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228

년월일	내역	잔액	계정	지출원인행위		잔액	지출액	잔액
				자금전도액	지급액			
	<b>당초예산승인</b>	2,762,000						
1.17	예산제 22 호배정		1,100,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4	120	2,719,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102	120	2,680,000
	<b>원계</b>	2,762,000		2,762,000	100			2,762,000
	<b>누계</b>	2,762,000		2,762,000	100			2,762,000
1.18	20 지출금전도			2,762,000		218	219	2,543,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18	219	2,324,000
	<b>원계</b>	2,762,000		2,762,000	218			2,543,000
	<b>누계</b>	2,762,000		2,762,000	218			2,543,000
1.19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19	2,305,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19	2,086,000
	<b>원계</b>	2,762,000		2,762,000	220			2,086,000
	<b>누계</b>	2,762,000		2,762,000	220			2,086,000
1.2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1,867,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1,648,000
	<b>원계</b>	2,762,000		2,762,000	220			1,648,000
	<b>누계</b>	2,762,000		2,762,000	220			1,648,000
1.21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1,429,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1,210,000
	<b>원계</b>	2,762,000		2,762,000	220			1,210,000
	<b>누계</b>	2,762,000		2,762,000	220			1,210,000
1.22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1,000,000
	20 지출금전도			2,762,000		220	220	781,000
	<b>원계</b>	2,762,000		2,762,000	220			781,000
	<b>누계</b>	2,762,000		2,762,000	220			781,000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22P

연월일	과목	계주	예산현액 ①	예산 배정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 배정잔액 (2-3-4)	지급 일련 번호	지출 일자	잔액	
					자급 도액 ③	외 도액 ④				예산액 ①-⑤	배정액 ②-⑤
1. 당초예산승인			704,000								
12 예산제 20-1 호배정				900,000							
20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770,000			22	120	770,000	
원 계			900,000	900,000	770,000					130,000	
수 계			900,000	900,000	770,000					130,000	770,000
2. 예산제 11-1 호배정				1,100,000							
19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620,000			19	2-19	620,000	
원 계				1,100,000	620,000					480,000	
수 계				1,100,000	620,000					480,000	620,000
3. 예산제 12-1 호배정				1,100,000							
19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670,000			20	2-19	670,000	
원 계				1,100,000	670,000					430,000	
수 계				1,100,000	670,000					430,000	670,000
4. 예산제 13-1 호배정				1,100,000							
20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620,000			20	2-20	620,000	
원 계				1,100,000	620,000					480,000	
수 계				1,100,000	620,000					480,000	620,000
5. 예산제 14-1 호배정				1,100,000							
20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670,000			20	2-20	670,000	
원 계				1,100,000	670,000					430,000	
수 계				1,100,000	670,000					430,000	670,000
6. 예산제 20-1 호배정				900,000							
재/회주경예산승인				900,000							
19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720,000			21	1-13	720,000	
원 계				900,000	720,000					180,000	
수 계				900,000	720,000					180,000	720,000
7. 예산제 26-1 호배정				1,100,000							
20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820,000			21	2-20	820,000	
원 계				1,100,000	820,000					280,000	
수 계				1,100,000	820,000					280,000	820,000
8. 예산제 28-1 호배정				1,100,000							
20 부동산 임대료 관련 및 기타 전산시스템 구축					820,000			21	2-20	820,000	
원 계				1,100,000	820,000					280,000	
수 계				1,100,000	820,000					280,000	820,000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264

322

관                      항                      세                      세                      부

일련 번호	내 역	계 주	예산원액 ①	예 정 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 배정잔액 (2-3-4)	지급 명 번호	지출 일자	지출액 ⑤	잔 액	
					자 급 전 도 액 ③	지 급 액 ④					예 산 액 ①-⑤	예 정 액 ②-⑤
1	당초예산승인		1,000,000									
1/1	예산제 22-2 호배정			1,000,000								
	월 수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	예산제 1-1 호배정			1,000,000								
	월 수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1	예산제 3-1 호배정			300,000								
	월 수		1,000,000	1,300,000							1,000,000	1,300,000
5	예산제 4-1 호배정			300,000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232 118

관            한            세            회            세            회            목

년 월	내 역	주	예산액 ①	예 정 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 배정 액 (2-3-4)	지 급 번호	지 출 일자	지 출 액 ⑤	잔 액	
					자 금 원 도 액 ③	지 급 액 ④					예산액 ①-⑤	예 정 액 ②-⑥
1	삼초예산승인		220,000									
17	예산제 1 호배정			200,000								
18	예산제 2 호배정			100,000								
19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110	1.19		200,000		
		장정식				200,000	111	"		200,000		
20		장정식				200,000	124	1.20		200,000		
	월 수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예산제 11 호배정			200,000							200,000	100,000
1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21	2.1		200,000		
2	예산제 12 호배정			300,000								
20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218	2.20		200,000		
		장정식				200,000	227	"		200,000		
22	예산제 13 호배정			1,000,000								
	월 수	계	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4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316	3.4		200,000		
2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32	3.11		200,000		
	월 수	계	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	예산제 14 호배정			200,000								
1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112	4.1		200,000		
2	예산제 15 호배정			200,000								
	월 수	계	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4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424	4.24		200,000		
	월 수	계	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6	예산제 16 호배정			1,000,000								
1	세무경보비	장정식				200,000	3019	6.1		200,000		
1	재/회주경예산승인		1,000,000									
24	예산제 17 호배정			1,000,000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관 합 세합 세세합 목

년월일	내역	채주	예산현액 ①	예배정산액 ②	지출원인행위		예산상간액 (2-3-4)	지출 지출 일자	지출액 ⑤	잔액	
					자금전 도액③	지출액 ④				예산액 ①-⑤	배정액 ②-⑥
10.1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18,000	118,000		2006. 10.1	118,000		
	<b>월계</b>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1	예산제 26호배정 사무경보비	기안 2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006. 11.1	134,000	134,000	3,000
11.2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00,000	100,000		2006. 11.2	100,000		
	<b>월계</b>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3,000
12.1	예산제 26호배정 사무경보비	기안 2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006. 12.1	134,000		
12.2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00,000	100,000		2006. 12.2	100,000		
	<b>월계</b>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3,000
10.1	예산제 26호배정 사무경보비	기안 2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006. 10.1	134,000		
10.2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00,000	100,000		2006. 10.2	100,000		
	<b>월계</b>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3,000
11.1	예산제 26호배정 사무경보비	기안 2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006. 11.1	134,000		
11.2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00,000	100,000		2006. 11.2	100,000		
	<b>월계</b>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3,000
12.1	예산제 26호배정 사무경보비	기안 2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2006. 12.1	134,000		
12.2	정원사수증서및정원사수증서부속의 정원사				100,000	100,000		2006. 12.2	100,000		
	<b>월계</b>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134,000	3,000

##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이 상 훈 위원	답 변	평창군수(재무과장)
회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행감1차 특위 ('93. 12. 1)		
<p>〈 질의요지 〉</p> <p style="margin-left: 40px;">○ 세입증대 수입관리면에서 정보비의 내용은.</p>			

〈 답 변 〉

○ '93년 당초예산에 지방세수증대 및 수입관리를 위한 정보비가 편성되었으나 '93년 제1회추경시 일부 삭감되었으며 이로인해 정보비 지출은 개인별로 매월23,000원씩 지급되는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만 지출하여 왔으며 이 밖에 일부는 세무조사 정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 질의. 서면 답변서

질 의	김낙운 위원	답변자	평창군수 (사회과장)
회 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93. 12 . 1 )		
<p>【 질의요지 】</p> <p>'93년 직업훈련 이수자중 취업자 현황</p>			

【 답변 】

김낙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 '93년 직업훈련 이수자 중 취업자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93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직업훈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자동차 정비	정보 처리	냉동 기계	기계 조립	기계 가공	목공 예	용 접	제 관	전 기	전 자	금 속	기 관	미 용
입 소	114	30	59	3	2	2	2	2	3	6	2	1	1	1
훈련중	23	1	6	2	-	1	2	1	2	5	1	1	-	1
수 료	91	29	53	1	2	1	-	1	1	1	1	-	1	-

- 직업훈련 이수자 중 취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자동차 정 비	정보 처리	기계 가공	냉동 기계	기관 정비	제관	용접	전기	기계 조립
수 료	91	29	53	1	1	2	1	1	1	2
1차합격자	30	16	10					1	1	2
자격증취득	10	3	2	1	1	2	1			
취 업	25	19	1	1	1	2	1			

○ 취업자 명단

주 소	성 명	자격증 취득명	취 업 처
방림면 방림1/4	김 혁	선반기능사 2급	거암정밀
봉평면 창동3리	이건홍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송도버스(주)
대화면 대화11리	전창현	고압가스냉동기계2급	정광수산
봉평면 떡거2리	이운섭	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대풍공업사
봉평면 면은2리	윤용훈	"	유성기업사
진부면 하진부1/5	최활순	제관기능사 2급	대명공업사
도암면 황계8리	곽정애	워드프로세서2급	삼성생명
도암면 황계6/4	김동현	자동차전기정비2급	동성공업사
용평면 도사리410	이주웅	1차합격 (기관정비)	한미에어콘
용평면 장평2리	임영식	1차합격 (기관정비)	재해산업
대화면 신리1/1	장미나	1차합격 (기관정비)	아산전자
대화면 상안미3/2	황창선	1차합격 (기관정비)	태광бат데
대화면 대화1/4	박종선	1차합격 (기관정비)	한미에어콘
대화9/1	김동숙	1차합격 (기관정비)	아산전자
대화11리	박인녀	1차합격 (기관정비)	아산전자
하안미리	곽우철	1차합격 (기관정비)	동성공업사
상안미4리	이관호	1차합격 (기관정비)	동해상사
대화리755	임경수	1차합격 (기관정비)	반도카센타
대화2/2	조병규	1차합격 (기관정비)	둔내주유소
신리5/1	허이영	1차합격 (기관정비)	태광бат데리
하안미1/4	조문희	1차합격 (기관정비)	재해산업
신리1/3	최현길	1차합격 (기관정비)	태광бат데리
방림면 방림리404	김윤미	1차합격 (기관정비)	아산전자
방림3/3	김명기	1차합격 (기관정비)	동해상사
방림리117	김구영	1차합격 (기관정비)	동성공업사

#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이 상 훈 의원	답변서	평창군수 (가정복지과장)
회 의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 1 차 특위 ('93. 12. 1.)		
<p>&lt; 질 의 요 지 &gt;</p> <p style="margin-left: 40px;">○ 보육원생 부모에 대한 소득평가 명단요구</p>			

< 답 변 >

1. 94년에 혜택받을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는 '93. 10. 15부터 10. 25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가구당 월평균소득조사는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여
  - 월평균소득 70만원미만 계층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 정(편부포함)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용의 50%수준을 지원하고,
  -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3. 영유아의 부모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소득조사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94. 가구당 월평균 소득및 재산조사 총괄표

번호	신 청 인	보육대상 아동	성별	소 득	비 고
1	손 기 준	손 나 진	여	₩1,300,000	
2		손 나 영	여	₩1,300,000	
3	이 영 일	이 정 화	여	₩580,000	
4	김 진 구	김 천 용	남	₩450,000	
5		김 소 연	여	"	
6	김 문 겸	김 예 립	여	₩1,000,000	
7	김 병 기	김 빙	여	₩1,200,000	
8	문 용 수	문 정 민	남	₩800,000	
9	조 순 호	조 효 영	여	₩500,000	
10		조 효 경	여	"	
11	이 종 석	이 지 애	여	₩1,000,000	
12	최 택 순	최 효 경	여	₩700,000	
13	이 용 진	이 유 미	여	₩400,000	
14	엄 기 남	엄 은 지	여	₩600,000	
15	안 제 흥	안 세 린	여	₩1,100,000	
16	강 태 봉	강 혜 지	여	₩1,800,000	
17	최 원 규	최 종 혁	남	₩1,000,000	
18	오 세 응	오 석 빈	남	₩1,300,000	
19	이 용 우	이 수 지	여	₩1,200,000	
20	백 철 규	백 하 비	여	₩1,000,000	
21	김 근 수	김 무 엽	남	₩1,700,000	
22	장 동 기	장 강 희	여	₩1,500,000	
23	한 왕 기	한 지 현	여	₩1,400,000	
24	이 영 결	이 송 주	여	₩1,200,000	
25	김 형 남	김 예 은	여	₩1,700,000	
26	이 세 열	이 민 규	남	₩800,000	

번호	신 청 인	보육대상 아동	성별	소 득	비 고
27	임 노 섭	임 경 완	남	₩420,000	
28	이 경 주	이 창 경	남	₩400,000	
29	이 경 주	이 수 현	여	₩1,400,000	
30	박 관 수	박 영 순	여	₩600,000	
31	김 회 철	김 현 빈	여	₩500,000	
32	배 종 주	배 용 수	남	₩600,000	
33	이 병 길	이 은 하	여	₩400,000	
34		이 은 영	여	"	
35	이 용 만	이 재 연	남	"	
36	김 기 택	김 연 경	여	"	
37	박 성 환	박 현 주	여	₩600,000	
38	조 제 완	조 신 애	여	₩400,000	
39	지 이 환	지 도 녀	여	₩600,000	
40	지 항 섭	지 세 립	여	₩500,000	
41	진 경 용	진 요 한	남	₩400,000	
42	유 석 자	김 동 욱	남	₩300,000	
43	김 인 석	김 나 회	여	₩1,450,000	
44	최 병 익	최 태 규	남	₩1,300,000	
45	김 남 국	김 건 휘	남	₩1,580,000	
46		김 의 영	여	"	
47	이 증 봉	이 혜 영	여	₩680,000	
48	장 흥 덕	장 성 호	남	₩1,100,000	
49	김 충 기	김 혜 령	여	₩1,100,000	
50	최 창 근	최 병 휘	남	₩700,000	
51	최 상 만	최 민 지	여	₩750,000	
52	최 찬 응	최 원 영	남	₩850,000	

번호	신 청 인	보육대상 아동	성별	소 득	비 고
53	조 성 래	조 현 태	남	₩800, 000	
54	김 병 삼	김 설 아	여	"	
55	김 병 국	김 민 지	여	₩900, 000	
56	전 성 재	전 보 람	여	₩800, 000	
57	이 천 행	이 준	남	₩900, 000	
58	박 승 환	박 중 민	남	₩900, 000	
59	김 현 수	임 해 민	여	₩800, 000	
60	정 석 교	정 의 경	여	₩1, 300, 000	
61	임 대 규	임 예 지	여	₩1, 800, 000	
62	김 영 복	김 형 승	남	₩1, 520, 000	
63	김 기 섭	김 병 호	남	₩1, 500, 000	
64	송 재 춘	송 은 호	남	₩1, 700, 000	
65	김 병 욱	김 상 종	남	₩610, 000	
66	최 규 성	최 현 수	남	₩1, 300, 000	
67	최 경 문	최 일 규	남	₩1, 400, 000	
68	서 태 일	서 희 주	여	₩1, 000, 000	
69	송 인 호	송 은 지	여	₩1, 600, 000	
70	김 재 훈	김 경 미	여	₩800, 000	
71	서 영 은	서 성 우	남	₩900, 000	
72		서 성 준	남	"	
73	하 명 수	하 주 령	여	₩1, 300, 000	
74		하 상 윤	남	"	
75	안 수 남	안 유 진	여	₩1, 100, 000	
76	박 경 환	박 대 우	남	₩700, 000	
77	이 승 수	이 주 희	여	₩740, 000	
78	유 재 선	유 은 욱	여	₩600, 000	
79	송 문 금	송 창 규	남	₩1, 000, 000	

번호	신 청 인	보육대상 아동	성별	소 득	비 고
80	장 성 구	장 용	남	₩800, 000	
81	이 형 근	이 연 철	남	"	
82	지 성 환	지 규 정	남	"	
83	이 길 섭	이 봉 규	여	"	
84	신 용 복	신 나 래	남	₩900, 000	
85	연 정 흠	연 승 호	남	₩800, 000	
86	장 완 규	장 용 호	남	"	
87	이 한 진	이 승 혁	남	₩900, 000	
88	이 영 규	이 기 흥	남	₩720, 000	
89	이 재 관	이 해 영	여	₩800, 000	
90	정 기 환	정 재 영	남	"	
91	최 승 일	최 지 애	여	₩1, 200, 000	
92	이 흥 섭	이 기 수	남	₩500, 000	
93	이 기 로	이 영 은	여	₩1, 000, 000	
94		이 조 은	여	"	
95	김 승 주	김 다 혜	여	₩750, 000	
96	김 병 식	김 순 연	여	₩600, 000	
97	한 상 근	한 든 혁	남	₩700, 000	
98	김 일 기	조 영 욱	남	"	
99		조 정 완	남	"	
100	곽 호 선	곽 충 구	남	₩400, 000	
101	이 광 노	이 영 준	남	₩900, 000	
102	유 재 춘	유 승 현	남	₩400, 000	
103	이 용 호	이 만 운	남	₩300, 000	
104	한 완 기	한 창 석	남	₩1, 200, 000	
105	최 근 우	최 복 미	여	₩400, 000	
106	조 영 순	조 인 화	여	₩500, 000	

